

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arts change the world

문화 

예술지원방식
다변화 방안
연구

/ 2020. 7

문화예술지원방식 다변화 방안 연구

2020년 7월 인쇄

2020년 7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352)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지원방식 다변화 방안연구

/ 2020. 7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예술지원방식 다변화 방안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주관기관 : (사)한국행정학회

연구책임자 : 윤 지 경(재정성과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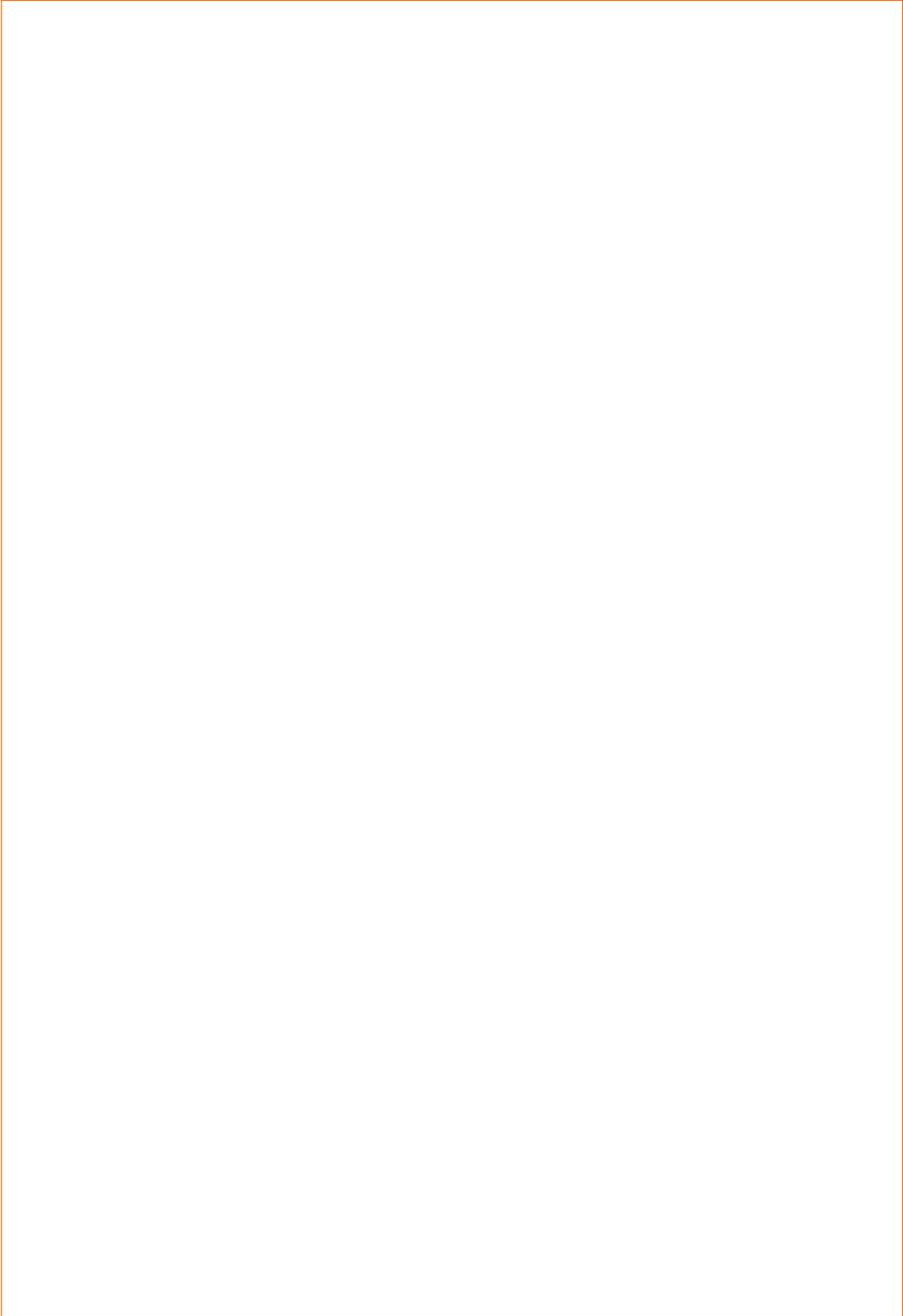
연 구 원 : 김 동 하(한성대학교 교수)

김 주 애(재정성과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차 상 권(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황 선 필(홍익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강 태 희(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목 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 연구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범위	14
2. 연구방법	15
제2장 문화예술위원회 현황	16
제1절 : 문화예술위원회 조직 및 인력	17
1. 조직현황	17
2. 인력현황	18
제2절 : 문화예술 지원사업 현황	19
1. 문화예술위원회 주요사업 현황	19
2. 문화예술지원 사업 현황	21
제3절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현황	27
1. 기금운용 총괄 현황	27
2. 문화예술지원 세부사업 현황	29
제3장 보조금 지원방식	40
제1절 : 개요	41
제2절 : 보조금 지원방식	55
1. 한국연구재단	55
2. 예술경영지원센터	60
3. 창업진흥원	64

제3절 : 투·융자방식의 지원방식	68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8
2. 한국콘텐츠진흥원	75
3. 문화체육관광부	79
4.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81
제4절 : 신용보증방식의 지원방식	83
1. 문화체육관광부	84
2. 한국콘텐츠진흥원	91
3. 콘텐츠공제조합	95
제4장 예술생태계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지원방식 다변화 방안	99
제1절 : 개요	100
제2절 : 투·융자방식의 접목가능성	101
제3절 : 신용보증방식의 접목가능성	104
제4절 : 조직 및 가치평가 방안	106
참고문헌	115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1972년 문화진흥법의 제정과 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어 각종 예술지원사업이 집행됐으며, 2005년 문화예술위원회가 진흥원을 대체하여 설립된 이후에는 자율·분권·참여의 정신 아래 다양한 현장예술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예술지원정책의 방향 및 기금배분 등이 이루어져 왔음
- 문화예술분야의 사업 지원은 시장실패 이론에 근거하여 직접 공급 또는 보조금 방식 위주로 추진됐으나 문화예술의 산업화 추세와 자생력 제고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물론, 이외에도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역할분담 부재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 예술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으로 재원대책, 경영혁신, 기금지원의 전략적 선택 등 조직발전과 비전에 대한 논의 부족, 기금 배분의 공정성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사업 지원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 측면에 초점을 두어 문화예술분야 사업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사업 방식을 진단하고, 타 공공기관의 사업지원방식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외 새로운 지원방식을 논의하여 문화예술인의 지원 확대와 문화예술분야 산업 진흥을 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지원방식의 다변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원방식 다변화 방안 제언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원방식 다변화를 통한 문화예술인의 수요에 대응한 적실성 높은 지원정책 도출과 문화예술위원회의 비전에 맞는 문화산업 분야 육성과 경쟁력 높은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분야 창발을 위한 지원정책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문화예술 지원방식의 다변화를 위하여 FGI,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타기관의 사업 지원 및 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문화예술위원회에 적실성이 높은 대안자료를 작성하면, 향후 위원회에서 사업의 계획, 집행, 모니터링, 평가 등 사업관리와 각종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 사업현황, 사업단계별 문화예술지원방식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4장에서는 새로운 지원방식으로서 투융자 방식과 신용보증방식의 접목가능성을 기술하고 있음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문화예술지원방식 다변화를 위한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음
- 현행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사업(지원)방식 진단
 - 장르별(문학, 시각, 공연 등) 사업방식, 지원수단, 주요 성과진단
 - 현행 문화예술지원체계의 취약점 진단
 - 지원방식 개선방향 검토
- 타 분야 사업(지원)방식 벤치마킹
 - 타 분야 사업지원방식 심층분석
 - 사업단계별 주요 사업방식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문화예술계 적용가능성 검토
- 예술생태계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지원방식 다변화 방안 도출
 - 사업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제언
 - 투·융자 등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방안 제언

2. 연구의 방법

- 적실성 높은 문화예술사업 지원방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음
- 현행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사업(지원)방식 진단
 - 현행 분석을 위하여 기초자료 조사와 함께 EOS(Employ Opinion Survey)를 병행하여 자료의 신뢰도 제고
- 타 분야 사업(지원)방식 벤치마킹
 - 유사분야 사례연구(Case Study) 실시
- 예술생태계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지원방식 다변화 방안 도출
 - 정책제안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제2장

문화예술위원회 현황

제1절 : 문화예술위원회 조직 및 인력

1. 조직현황
2. 인력현황

제2절 : 문화예술 지원사업 현황

1. 문화예술위원회 주요사업 현황
2. 문화예술지원 사업현황

제3절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현황

1. 기금운용 총괄현황
2. 세부사업 현황

제1절 문화예술위원회 조직 및 인력

1. 조직현황

-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현황 살펴보면, 현재 1처 5본부 20부로 구성되어 있음
 - 사무처장 아래 경영전략본부, 문화시각예술본부, 공연예술본부, 예술확산본부, 예술공간운영본부가 있음

[그림 2-1] 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1처 5본부 20부(개정 2019.3.4)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인력현황

- 문화예술위원회의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정원 265명에 현원 245명(약 92.45%)으로 인력충원이 다소 부족한 상태임
 - 일반직 I의 경우 정원 149명에 현원 135명이며, 일반직II의 경우 정원 113명에 현원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2> 문화예술위원회 인력 구성

구분	계	임원	소계	일반직		
				사무처장	일반직I	일반직II
정원(T/O)	265	2	263	1	149	113
현원(P/O)	245	2	243	-	135	108

* 장현원 일반직 I, II 포함(2019. 4. 1. 기준)

제2절 문화예술 지원사업 현황

1. 문화예술위원회 주요사업 현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지원을 포함한 국고수탁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수탁사업, 고용보험기금 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총괄함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사업을 수탁 받아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업무를 담당
- 국민체육진흥기금 수탁사업은 2017년 약 56억, 2018년 약 35억, 2019년 약 31억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2017년은 결산 기준, 2018년~2019년은 예산기준)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작은 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예술기록물 DB구축’,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수탁사업 중 2017년도에 3개 사업이 종료되고, 2018년도에 3개 사업이 문예기금으로 이관되어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임
- 문예위의 국고수탁사업은 2014년도 약 171억 규모에서 2015년 약 377억, 2016년 약 540억, 2017년 47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8년도부터 감소 추세
 - 2018년도에는 약 244억, 2019년도 예산 기준 약 184억 사업지원 결정된 상태
 - 총 지원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원총액의 변화에 따라 2016년에는 11.9%까지 증가하였다가 2018년에는 7.1% 감소(사업비 증감의 이유 확인필요)
- 고용보험기금 수탁사업은 규모가 약 3억 원 정도이며,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규모에 있어서 큰 증감의 폭을 보이지 않음
 -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탁사업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으로 문화예술 현장 재직자(문화행정·기획·경영·분야)대상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여 문화예술분야 재직 종사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임

<표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360,170	335,021	390,857	532,127	315,205	468,533
	(92.0%)	(86.3%)	(86.4%)	(91.0%)	(91.7%)	(95.5%)
국고 수탁사업	17,119	37,696	53,960	47,502	24,365	18,391
	(4.4%)	(9.7%)	(11.9%)	(8.1%)	(7.1%)	(3.8%)
국민체육진흥기금 수탁사업	13,319	14,965	7,030	4,989	3,738	3,173
	(3.4%)	(3.9%)	(1.6%)	(0.9%)	(1.1%)	(0.6%)
고용보험기금 수탁사업	1,075	334	519	367	348	260
	(0.3%)	(0.1%)	(0.1%)	(0.1%)	(0.1%)	(0.1%)
합계	391,683	388,016	452,366	584,985	343,656	490,357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문화예술위원회 주요사업현황, 공공기관 알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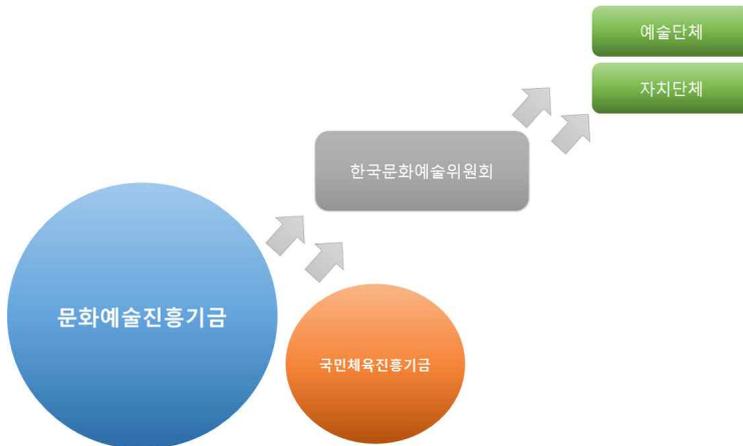
2. 문화예술지원 사업현황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지원 사업 방식

□ 문예위의 문화예술분야 사업지원은 사업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민간단체, 지자체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문예위에서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사업비의 재원은 문예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¹⁾ 2개임
- 문화예술 분야 지원의 90% 이상은 문예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사업 지원은 규모가 작음

[그림 2-16] 문화예술지원 사업 구조 도식화



1) 국민 체육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 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 진흥 공단으로 하여금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음. 기금의 재원은 ①정부나 그 밖의 출연금, ②각종 체육 시설의 입장료 또는 경마 마권에 대한 부가 모금(附加募金), ③각종 광고 사업의 수입금, ④체육시설의 운영 수입금, ⑤체육시설과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운영 수익금, ⑥기금 운영의 수익금, ⑦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이 기금의 사용은 ①국민 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②국민 체육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③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④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⑤광고 기타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⑥올림픽대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에서 임상한 은퇴 선수 또는 그 경기 지도자에 대한 생활 보조금 지원, ⑦기타 체육 진흥법에 규정된 자금의 용자, ⑧ 88서울 올림픽 대회가념 사업, ⑨기타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함

나. 공모사업 지원결정 총괄현황

- 문예기금을 통한 지원은 창작 분야 사업지원과 문화예술향유 사업 지원으로 구분되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창작 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만 실시 중에 있음
 -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지원심의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총 지원 건수는 8,042건이었으며, 지원이 결정된 건수는 2,683건으로 사업에 선정될 확률은 33.36%였음
 - 창작 분야에 대한 지원 건수가 향유 분야보다 약 3배 정도가 높았으며 지원사업에 선정될 확률은 창작 분야가 34.36%로 향유 분야보다 약 5% 정도 높게 나타남
 - 문예기금을 통한 총 지원액은 약 600억 규모이며, 창작 분야에 400억, 향유 분야에 200억을 지원하고 있음(2018년도에는 창작 분야 잔여 예산이 약 11억 정도 발생)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사업 지원은 창작 분야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 총 97건 지원 중 50건 지원이 결정되면서 선정 확률 51.55%로 나타남
 - 지원액의 경우 약 23억 정도의 규모이며, 잔여 예산은 약 3억원 발생

<표 2-4> 기금별 지원결정 총괄 현황

(단위: 백만 원)

기금		지원신청현황			지원결정현황				
		지원신청 건수(A)	신청액(B)	예산 배정액	지원선정 건수 (C)	비율 (C/A)	지원총액 (D)	비율 (D/B)	잔여예산
문화예술진흥기금	창작	6,339	168,135	41,619	2,178	34.36%	40,466	24.07%	1,153
	향유	1,703	66,956	20,210	505	29.65%	20,150	30.09%	60
	소계	8,042	235,090	61,829	2,683	33.36%	60,616	25.78%	1,213
국민체육진흥기금	창작	97	9,099	2,588	50	51.55%	2,267	24.92%	321
계		8,139	244,189	64,417	2,733	33.58%	62,883	25.75%	1,534

자료: 2018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지원심의결과

□ 문화예술진흥기금 창작사업 분야별 지원결정 총괄 현황

- 문예기금 ‘창작’사업은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뮤지컬’, ‘예술일반’ 총 8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음
- 2018년 지원심의결과, 지원신청 건수별로 살펴보면, 총 6,339건 지원하여 2,178건이 지원 사업 대상자(약 34.35%)로 선정되었음
- 가장 많은 신청 분야는 ‘문학’이었으며 지원총액은 약 24억 규모임
- 지원총액이 가장 큰 규모는 ‘예술일반’, ‘연극’, ‘음악’ 분야 순으로 나타났음

<표 2-5> 문화예술기금 ‘창작’ 지원 사업 분야별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지원신청현황			지원결정현황				
	지원신청 건수(A)	신청액(B)	예산 배정액	지원선정 건수 (C)	비율 (C/A)	지원총액 (D)	비율 (D/B)	잔여예산
문학	2,030	22,011	2,577	187	9.21%	2,464	11.19%	113
시각예술	782	18,077	3,829	232	29.67%	3,662	20.26%	166
연극	1,114	31,915	7,750	548	49.19%	7,659	24.00%	91
무용	484	12,423	3,163	199	41.12%	3,145	25.32%	18
음악	988	16,483	5,578	689	69.74%	5,432	32.96%	145
전통예술	461	12,956	2,754	189	41.00%	2,697	20.82%	56
뮤지컬	102	11,052	2,450	21	20.59%	2,019	18.27%	431
예술일반	378	43,219	13,519	113	29.89%	13,388	30.98%	131
계	6,339	168,135	41,619	2,178	34.36%	40,466	24.07%	1,153

자료: 2018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지원심의결과

□ 문화예술진흥기금 향유사업 분야별 지원결정 총괄 현황

- 문예위가 지원하는 향유사업이란, 창작예술과는 다르게 일반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 또는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 문예위의 향유사업 지원은 ‘매칭형’, ‘발굴형’, ‘소규모’로 구분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향유사업 지원은 매칭형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건수가 제일 많고, 지원총액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매칭형 사업의 경우, 선정 확률이 25.08%였으며, 지원총액은 약 126억이었음
- 매칭형 사업의 지원결정액은 회당 지원금이며, 지원총액은 ‘회당결정액 X 공연 및 전시횟수(단체당 약 10회)’로 산출된 값임
- ‘발굴형’, ‘소규모’사업의 경우, 2차에 걸쳐서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결정하였음

<표 2-6> 향유사업 분야별 지원결정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지원신청현황			지원결정현황					
	지원신청 건수(A)	신청액 (B)	예산 배정액	지원선정 건수 (C)	비율 (C/A)	결정액 (D)	비율 (D/B)	지원총액	잔여예산
매칭형	949	5,411	13,000	238	25.08%	1,271	23.49%	12,614	386
발굴형	141	21,562	4,000	33	23.40%	3,458	16.04%	3,458	542
소규모	283	3,233	3,210	137	48.41%	1,537	47.54%	1,537	1,673
발굴형 2차	115	34,320	-1,650	19	16.52%	1,641	4.78%	1,641	9
소규모 2차	215	2,430	-900	78	36.28%	900	37.04%	900	
계	1,703	66,956	20,210	505	29.65%	8,807	13.15%	20,150	60

자료: 2018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지원심의결과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별 지원결정 총괄 현황

- 문예위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와 함께 지자체에 사업보조를 함께 하고 있음
- 광역지자체 17곳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에 약 296억, 경기권에 약 73억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표 2-7> 지역별 지원결정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지원신청현황		지원결정현황			
	지원신청 건수(A)	신청액 (B)	지원선정 건수 (C)	비율 (C/A)	결정액 (D)	비율 (D/B)
서울	3,868	119,238	1,541	39.84%	29,608	24.83%
부산	344	8,953	116	33.72%	2,691	30.06%
대구	269	9,407	85	31.60%	2,945	31.30%
인천	217	7,058	51	23.50%	1,353	19.17%
광주	228	5,845	64	28.07%	1,435	24.56%
대전	182	5,402	64	35.16%	1,691	31.31%
울산	65	1,298	14	21.54%	440	33.92%
경기	1,450	31,740	388	26.76%	7,390	23.28%
강원	219	6,804	58	26.48%	2,409	35.40%
충북	180	4,361	60	33.33%	1,599	36.66%
충남	148	4,672	28	18.92%	1,220	26.11%
전북	214	8,063	53	24.77%	2,434	30.19%
전남	173	7,683	43	24.86%	1,962	25.53%
경북	165	4,800	31	18.79%	829	17.27%
경남	230	7,088	58	25.22%	1,851	26.12%
제주	65	2,400	21	32.31%	521	21.70%
세종	25	279	8	32.00%	238	85.57%
계	8,042	235,090	2,683	33.36%	60,616	25.78%

자료: 2018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지원심의결과

□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분야별 지원결정 총괄 현황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문화예술분야 지원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창작’분야에만 지원을 하고 있음
- 문예기금을 통한 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사업 분야 중 ‘뮤지컬’분야를 제외한 7개 분야의 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 2018년도의 경우, 무용 분야에는 사업비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문예기금과 마찬가지로 ‘문학’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신청 건수를 보였으며, 지원액은 약 6억 정도의 규모를 보임
- 문예기금과 비교했을 때 지원총액 규모가 크게 작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원 사업에 선정될 확률은 51.55%로 나타남
- 특히, 가장 많이 지원신청을 한 분야인 ‘문학’에서는 78.72%의 높은 선정확률을 보였음

<표 2-8>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분야별 지원결정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지원신청현황			지원결정현황				
	지원신청 건수(A)	신청액(B)	예산 배정액	지원선정 건수 (C)	비율 (C/A)	지원총액 (D)	비율 (D/B)	잔여예산
문학	47	945	798	37	78.72%	589	62.29%	209
시각예술	15	764	590	9	60.00%	479	62.63%	111
연극	17	3,035	120	1	5.88%	120	3.95%	
무용	0				0.00%		0.00%	
음악	9	1,104	70	1	11.11%	70	6.34%	
전통예술	6	1,372	110	1	16.67%	110	8.02%	
예술일반	3	1,879	900	1	33.33%	900	47.91%	
계	97	9,099	2,588	50	51.55%	2,267	24.92%	321

자료: 2018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지원심의결과

제3절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현황

1. 기금운용 총괄현황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모

- 2017년 약 5,402억 규모에서 2018년 3,481억 2019년 예산 기준 4,685억 원 규모로 증감의 변동이 있지만 2017년 기준으로 약 700억 이상 감소함

<표 2-9>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운용규모	2017년 결산	2018년 계획		2019년 계획		
		당초	수정	요구	정부안	예산
	540,207	348,067	348,067	408,732	468,533	468,533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조달 및 운용 규모

- 기금의 조달은 정부내부수입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3,056억 원 규모임
- 운용 규모는 사업비 약 2,510억, 여유자금운용은 1,918억 규모임

<표 2-10>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조달 및 운용 규모

(단위: 백만 원)

2019년 총 조달규모		2019년 총 운용규모	
계	468,533	계	468,533
○ 자체수입	63,631	○ 사업비	251,077
		○ 기금운영비	20,654
○ 정부내부수입	305,561	○ 정부내부지출	5,000
○ 여유자금회수	99,341	○ 여유자금운용	191,802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총괄표 현황

- 문예기금 지원사업 사업비의 2018년과 2019년과의 비교는 다음과 같음(예산을 기준으로 비교)
- 2019년도의 문화예술분야 지원 총사업비는 약 2,51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2%가 증가했음
- 예술창작지원 분야에 약 108억이 증액(31.7% 증가)되어서 가장 높은 증가 추이를 보임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는 2019년 지원 사업으로 신설되어 85억을 지원하게 되었음
-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지원, 예술의관광자원화, 예술정책 및 문화예술향유지원 분야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감소했음

<표 2-11>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당초 (A)	2019년 계획 (B)	증감	
			(B-A)	%
사업비	227,898	251,077	23,179	10.2
예술창작지원	34,191	45,033	10,842	31.7
예술인력육성	13,641	14,082	441	3.2
예술인생활 안정자금(용자)	-	8,500	8,500	순증
지역문화예술지원	7,389	6,739	△650	△8.8
예술의관광자원화	24,707	21,233	△3,474	△14.1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29,851	22,950	△6,901	△23.1
문화예술향유지원	118,119	132,540	14,421	12.2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2. 문화예술지원 세부사업 현황

가. 예술창작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순수예술 분야 예술가(단체)의 창작활동 지원과 창작여건 개선
- (참고사항)2017년 과목구조 개편으로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을 2018년부터 예술창작지원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 (사업비 증감)2019년 지원액 약 450억 원이며, 전년대비 108억 증가(31.7%)

<표 2-12> 예술창작지원 사업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2019년			증감 (B-A)	(B-A)/ A
		당초(A)	수정	요구안	정부안	확정(B)		
예술창작지원	29,651	34,191	34,191	38,602	46,493	45,033	10,842	31.7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실명자료

□ 예술창작지원 사업비 세부내역

<표 2-13> 예술창작지원 상버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예술창작지원	29,651	34,191	45,033	10,842	31.7
○ 문학창작육성	2,424	3,275	2,986	△289	△8.8
- 문학창작산실	1,606	2,425	2,050	△375	△15.5
- 문학광장운영	598	600	600	-	-
- 문학주간운영	-	-	336	336	순증
-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220	250	-	△250	순감
○ 시각예술창작육성	2,945	2,801	2,560	△241	△8.6
- 시각예술창작산실	1,795	1,800	1,615	△185	△10.3
-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	970	940	945	5	0.5
- 코리안아트스트프로젝트	180	61	-	△61	순감
○ 공연예술창작육성	17,725	22,085	26,404	4,319	19.6

(단위: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공연예술창작산실	4,901	8,640	9,277	637	7.4
-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8,315	8,895	7,665	△1,230	△13.8
- 공연장대관료지원	-	3,300	2,952	△348	△10.5
-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	1,050	950	△100	△9.5
- 공연예술온라인확산지원 (구. 기초예술사이버공간개척)	-	-	2,500	2,500	순증
- 공연예술공간지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	-	3,060	3,060	순증
- 대관공연장운영	96	-	-	-	-
- 창작유지컬육성	4,232	-	-	-	-
- 융복합무대기술매칭지원	181	200	-	△200	순감
○ 기초예술사이버공간개척	589	270	-	△270	순감
○ 국제예술교류지원	5,968	5,760	6,293	533	9.3
-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1,043	1,000	1,000	-	-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4,925	4,760	5,293	533	11.2
○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	5,490	5,490	순증
○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	-	300	300	순증
○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	-	1,000	1,000	순증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실명자료

나. 예술인력육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신진예술가와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초예술 분야 성장동력 확충

□ 주요 사업내용

- (사업내용)문학, 시각, 공연예술 등 기초예술분야 현장 전문이력 육성(재교육) 및 일자리 지원
- (사업기간)단년도/1979년~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표 2-14> 예술인력육성 사업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2019년			증감 (B-A)	(B-A)/ A
		당초(A)	수정	요구안	정부안	확정(B)		
예술인력육성	14,004	13,641	13,641	13,145	14,082	14,082	441	3.2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 예술인력육성 사업비 세부내역

- 예술인인력 육성 사업은 차세대예술인력육성과 현장예술인력육성 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예술인인력육성 총 사업비 약 140억 중 차세대예술인력육성에 약 30억을 지원하며, 현장예술인력육성에 약 110억을 지원하고 있음(2019년 기준)
- 현장예술인력육성 분야에 비중을 크게 두고 사업 지원을 하고 있음

<표 2-15> 예술인력육성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예술인력육성	14,004	13,641	14,082	441	3.2
○ 차세대예술인력육성	2,374	2,941	2,992	51	1.7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2,274	1,600	1,572	△28	△1.8
- 전통예술기획자양성프로젝트	100	90	90	-	-
- 창작유지컬아카데미	-	781	742	△39	△5.0
- 무대예술전문교육	-	470	588	118	25.1
○ 현장예술인력육성	9,249	10,700	11,090	390	3.6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운영	3,927	4,169	4,702	533	12.8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구.공연예술스태프지원)	2,610	3,271	3,107	△164	△5.0
- 사립미술관전문인력운영지원	1,412	1,200	1,200	-	-
-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	1,300	1,300	1,300	-	-
- 창의예술인력센터운영	-	460	500	40	8.7
- 예술가의집운영	-	300	281	△19	△6.3
○ 창작유지컬아카데미	986	-	-	-	-
○ 무대예술전문교육	588	-	-	-	-
○ 창의예술인력센터운영	489	-	-	-	-
○ 예술가의집운영	318	-	-	-	-

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사업개요

- (사업목적)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금융제도와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지원
- (참고사항)2019년에 사업 신설

□ 주요 사업내용

- (사업내용)중위소득 75% 이하의 예술인 대상 긴급 생활자금 소액 대출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 제공
- (사업기간)단년도/2019년~계속사업

<표 2-16>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2019년			증감 (B-A)	(B-A)/ A
		당초(A)	수정	요구안	정부안	확정(B)		
예술인생활 안정자금(용자)	-	-	-	-	10,500	8,500	8,500	순증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비 세부내역

<표 2-17>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	8,500	8,500	순증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	-	8,500	8,500	순증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라. 지역문화예술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중앙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 (참고사항)2017년 내역사업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사업(16년 예산 162억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주요 사업내용

- (사업내용)지역 공연장과 공연단체 협력관계(상주단체)에 의한 지역 공연장 활성화 및 지역과의 상시적 협력활동을 통해 지역 단위의 예술창작 관련 활동 지원
- (사업기간)단년도/2019년~계속사업
- (사업추진방식)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정률)

<표 2-18>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2019년			증감 (B-A)	(B-A)/ A
		당초(A)	수정	요구안	정부안	확정(B)		
지역문화예술 지원	7,381	7,389	7,389	6,739	6,739	6,739	△650	△8.8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비 세부내역

- 지역문화예술지원은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과 지역문화협의체 등 운영 두 분야에 지원하고 있음
- 지역문화예술지원 총 사업비 약 67억 중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에 약 64억 지원 예정(2019년 기준)

<표 2-19>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지역문화예술지원	7,381	7,389	6,739	△650	△8.8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구.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7,111	7,119	6,469	△650	△9.1
○ 지역문화협의체등운영 (구.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	270	270	270	-	-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실명자료

마. 예술의 관광자원화

□ 사업개요

- (사업목적)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육성과 국민 문화 향유권을 신장, 전통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외 전략적 진출 도모
- (참고사항)2016년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추진방식)직접수행, 민강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정률)

<표 2-20> 예술의 관광자원화 사업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2019년			증감 (B-A)	(B-A)/ A
		당초(A)	수정	요구안	정부안	확정(B)		
예술의 관광자원화	24,393	24,707	25,307	22,533	21,233	21,233	△3,474	△14.1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실명자료

□ 예술의 관광자원화 사업비 세부내역

- 예술의 관광자원화 사업비는 총 8개 세부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음
- 2017년 이후, 2018년과 2019년 계속해서 사업비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음
- 가장 큰 폭으로 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사업은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공연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5억원이 감소(증감률 -32.5%)

<표 2-21> 예술의 관광자원화 사업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예술의관광자원화	24,393	24,707	21,233	△3,474	△14.1
○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11,443	11,543	9,395	△2,148	△18.6
○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3,300	2,700	2,594	△106	△3.9
○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공연사업	1,628	1,628	1,099	△529	△32.5
○ 문화공간활용전통공연사업	1,400	1,400	1,400	-	-
○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2,961	2,986	2,686	△300	△10.0
○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2,161	2,200	2,007	△193	△8.8
○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1,500	1,450	1,322	△128	△8.8
○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	800	730	△70	△8.8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바.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목적)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기부 문화 활성화를 통한 민간영역의 기부 공감대 형성 및 예술지원 재원의 다각화

□ 주요 사업내용

- (사업내용)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 여론 및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예술 홍보와 통계자료 등 간행물 발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추진
- (사업추진방식)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책)

<표 2-22>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사업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2019년			증감 (B-A)	(B-A)/ A
		당초(A)	수정	요구안	정부안	확정(B)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25,560	29,851	29,851	27,224	22,950	22,950	△6,901	△23.1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실명자료

□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사업비 세부내역

- 세부사업은 예술정책실행력제고,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원로문예인복지지원,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예술자료원), 예술경영센터지원으로 구분
- 전반적으로 사업비 지원은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예술정책실행력제고 중 ‘문화예술홍보 및 컨설팅 지원’, ‘예술지원정책지원’등이 2019년 사업이 신설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함

<표 2-23>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사업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25,560	29,851	22,950	△6,901	△23.1
○ 예술정책실행력제고	1,298	1,438	1,445	7	0.5
- 문화예술홍보및컨설팅지원	-	-	630	630	순증
- 예술지원정책지원	-	-	815	815	순증
- ①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456	500	-	△500	순감
- ②예술지원실태조사및정책개발	427	400	-	△400	순감
- ③예술지원정보컨설팅서비스	99	100	-	△100	순감
- ④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	100	100	-	△100	순감
- ⑤공연예술실태조사	216	203	-	△203	순감
- ⑥정책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	135	-	△135	순감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19,388	23,813	19,413	△4,400	△18.5
- 기부금사업	15,913	20,183	15,913	△4,270	△21.2
- 예술나무운동	-	-	1,500	1,500	순증
- 민간후원활성화지원	-	-	2,000	2,000	순증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3,345	3,500	-	△3,500	순감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130	130	-	△130	순감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	-	116	116	순증
○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 (예술자료원)	-	-	1,976	1,976	순증
○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4,874	4,600	-	△4,600	순감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사. 문화예술향유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제공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 (참고사항)2018년도부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을 복권기금 사업으로 편성하고, 기존 복권사업인 공연 나눔(소외계층문화순회, 방방곡곡문화공감)은 문예기금으로 편성, 창작나눔(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는 체육기금으로 이관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추진방식)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정률)

<표 2-24>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결산	2018년		2019년			증감 (B-A)	(B-A)/ A
		당초(A)	수정	요구안	정부안	확정(B)		
문화예술 향유지원	107,088	118,119	118,119	128,505	136,100	132,540	14,421	12.2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문화예술향유지원	107,008	118,119	132,540	14,421	12.2
○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69,882	82,103	91,501	9,398	11.4
○ 신나는예술여행 (구.소외계층문화순회)	-	-	25,289	25,289	순증
○ 방방곡곡문화공감	-	-	15,750	15,750	순증
○ 공연나눔	36,046	36,016	-	△36,016	순감
- 소외계층문화순회	21,046	21,016	-	△21,016	순감
- 방방곡곡문화공감	15,000	15,000	-	△15,000	순감
○ 창작나눔(생활문화공동체)	1,080	-	-	-	-

자료: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제3장

보조금 지원방식

제1절 : 개요

제2절 : 보조금 지원방식

1. 한국연구재단
2. 예술경영지원센터
3. 창업진흥원

제3절 : 투·융자방식의 지원방식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한국콘텐츠진흥원
3. 문화체육관광부
4.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5. 방송통신발전기금

제4절 : 신용보증방식의 지원방식

1. 문화체육관광부
2. 한국콘텐츠진흥원
3. 콘텐츠공제조합

제1절 개요

- 본 장에서는 사업지원 방식의 다변화의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타 공공기관의 지원방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선정된 기관은 한국연구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창업진흥원임
 - 이들 기관은 해당 산업분야의 지원방식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사업지원방식의 꾸준한 모색을 통해 점점 규모를 높이고 있는 기관임
- 현재의 지원제도는 문화예술 현장(수혜자)의 수용도가 낮은 동시에 지원과정에서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²⁾
 - 특히, 지원제도간의 연계성 결여, 성장단계별 특성이 배제되어 안정적인 창작 활동 환경에 제약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됨
 -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단과의 관계와 성격이 유기적이지 않아, 다양한 단체와 지원과정이 존재함에도 수혜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재정적 지원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구분이 모호한 문화예술산업의 분야(장르 구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산업에서의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는 꾸준히 있었음
 - 지원 분야에 대한 명확한 대상(target)이 결여되거나 향유사업에 편중되어 창작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문화예술 종사자의 종사여부, 재정투입시점과 성과산출시점의 괴리로 인한 성과평가의 어려움이 지원 분야의 한정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문예위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방식의 개선점을 모색해보고자 유사함
 - 일례로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성과평가가 수반되는 지원 방식(수월성 연구지원)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의 기초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성과평가가 수반되지 않는 지원방식(안정적 연구지원)도 현재 수행 중에 있음
- 기존의 재정적 지원방식(보조금 지원방식)과 더불어 제도적 방식에서의 차용가능

2) 사후평가를 통한 문화예술지원 확대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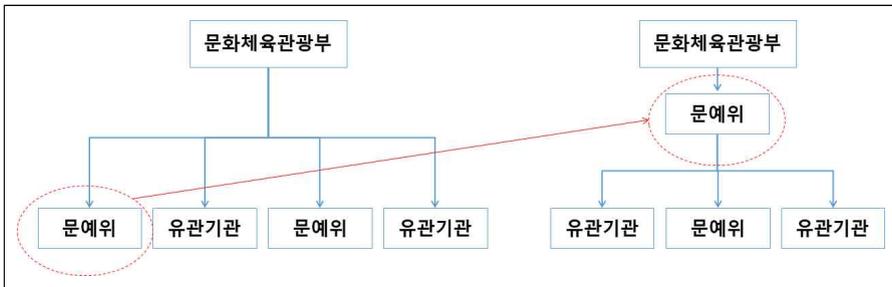
성을 엿보고 이로 인해 문화·예술 산업의 수혜자의 확대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한승준 등(2017)의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음

-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향후 미래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문화예술은 기존 장르가 해체되고 장르 간 혼합, 새로운 장르 출현 등 다양성이 가미된 문화예술의 범(凡)장르적 추세가 나타날 것임
- 융합장르의 출현에 따라 순수와 대중예술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초예술과 문화산업 간의 구분이 약화됨
 - 따라서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지방화 시대에 맞춰 지역에서 갖는 문화예술의 의미가 중요해질 것임. 현재에도 각 지역의 문화재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미래에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영역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지방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간 조화, 예술의 산업화로 변모하고 있음. 향후 생활문화, 일상문화로서 문화예술의 영역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내용 등질적 측면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의 사회적 통합, 교육, 복지, 웰빙, 건강 등 전 분야에서의 역할이 중요시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임
- 미래의 문화예술 환경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정책주체는 관에서 민간 중심으로 나아갈 것임
 - 다양한 지원주체 및 수혜자들이 존재하는 복잡한 정책 환경에서 이들 간 협력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예술의 범위 확대에 따라 문화, 예술, 정보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계의 중장기적 변화와 대응이 필요함
 - 문화예술의 다양한 복합형식이나 장르출현으로 예술 활동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있어야 함
- 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 공통적으

로 팔 길이 원칙³⁾에 기반 하여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순수예술 분야는 경제적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미래 영향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음
-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의 창의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 특히 현재 문화예술위원회는 당초의 합의제 취지와 달리 정부의 영향을 받아 예술계를 통제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음
- 문체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대상이 예술정책임을 감안할 때 문화예술위원회는 문체부의 권력과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예술가와 일반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체제로 개편되어야 함



- 손정혁 등(2019)의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지원기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예위의 지원범위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함
 - 현행 문예위의 예술분야에 전통예술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음
 - 문학예술 : 언어로 된 예술로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을 포함하는 장르

3)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공공지원 정책에서 하나를 준거하는 기준으로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임

- 시각예술 : 시각적 감각에 기반을 둔 예술로 미술, 설치, 서예, 사진, 건축, 미디어 아트 등을 포함하는 장르
- 공연예술 : 무대에서 공연되는 형태의 예술로 연극, 무용, 음악 등을 포함하는 장르
- 전통예술 : 전통예술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문화예술, 전통시각예술, 전통공연예술을 포함하는 장르
- 다원예술 : 사회적 가치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예술로 융·복합예술을 포함하는 장르
- 예술비평 : 예술작품에 대한 비판적 논의이며, 예술의 각 장르에 대한 비평을 포함하는 장르

1안		2안	
장르	소분류	장르	소분류
문학예술	시	문학예술	시
	소설		소설
	수필		수필
	희곡		희곡
시각예술	미술	시각예술	미술
	설치		설치
	서예		서예
	사진		사진
	건축		건축
	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트
공연예술	연극	공연예술	연극
	무용		무용
	음악		음악
※ 전통예술을 각 장르에 포함		전통예술	전통문학예술
			전통시각예술
			전통공연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다양성예술		다양성예술
예술비평	문학예술 비평	예술비평	문학예술 비평
	시각예술 비평		시각예술 비평
	공연예술 비평		공연예술 비평
	다원예술 비평		다원예술 비평

- 본 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방식을 확대의 일환으로 투·융자방식과 신용보증방식을 중심으로 문예위에서의 접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함
- 다수의 연구와 정책연구에서 살펴보면 그간의 보조금 지원방식의 산업육성 및 보호 정책에 대한 효과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방식의 한계점이 꾸준히 제기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자원배분결정, 소득분배, 지출생산성, 경제탄력성을 고려한 것이 보조금 지원방식이며 이는 수혜자에게 가장 혜택이 발생하는 방법이었음(권오성·박민정, 2009)
 - 정부의 개입 없이 벌 수 있는 소득보다 생산자의 소득을 더 끌어올리는 정책수단으로 다양한 정부정책에서 이용되고 있음(Schwartz and Clements, 1999)
- 그 간 문화·예술 분야에서 보조금 지원방식이 가장 주된 방법으로 이용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보조금의 3가지 기본요건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첫째,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 둘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여야 하며, 셋째, 지원으로 말미암은 혜택이 있어야 함
 - 이 3가지 요건은 정부의 산업보호와 육성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잘 나타낸 방법이 보조금 지원방식임
- 문화·예술 분야에서 흔히,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로 생산물과 생산과정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 중에 있음. 이러한 타개책의 일종으로 보조금 지원방식은 생산비용이 낮아지고 공급이 증가하여 과소생산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았음
- 그러나 지원이 없으면 산업육성이 되지 않거나 지원이 없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 의존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외부효과(external effect)와 같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다시 정부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지원)해야 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1972년 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각종 예술지원 사업과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와 기초가 마련되었음.
 - 정부산하기관으로 존재하였던 한국문예진흥원을 대신해 2005년에는 문화예

술위원회가 설립됨

□ 그 취지는 원장 중심의 독임제 체제가 다양한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자율·분권·참여의 정신을 예술정책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예술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예술지원정책의 방향 및 기금배분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함임

-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역할분담 부재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
 - 예술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으로 재원대책, 경영혁신, 기금지원의 전략적 선택 등 조직발전과 비전에 대한 논의 부족
 - 기금 배분의 공정성 문제

<표-1> Hillman-Chartrand & McCaughey의 유형화

모델의 역할	국가	정책목표	지원방식	강점과 약점
촉진자 (facilitator)	미국	다양성	조세지출과 인센티브	강점: 재원의 다양성 약점: 수월성이 보장 안 됨, 세금액 계산과 평가, 후원자 중심 혜택
후원자 (patron)	영국, 캐나다, 호주	수월성, 국제적 기준	팔길이 원칙 평가	강점: 수월성 지원 약점: 엘리트예술 선호
설계자 (architect)	프랑스, 서부유럽국가	사회복지, 산업지원	문화부처	강점: 상업성 경감, 안정된 교육 및 직업구조 약점: 지시규정에 따른 침체와 저항
기술자 (engineer)	구공산권국가, 쿠바, 남북한	정치교육, 국가문화	문화예술생산 수단의 국가소유	강점: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역량 집중 약점: 추종적, 비밀스러운, 반직관적 산출

□ 공연예술시장은 작품의 독창성으로 인한 독점적 경쟁시장으로서, 일반 시장원리에 의하면 독점시장이란 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고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독점이윤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공연예술시장은 높은 고정비용으로 인하여 평균비용보다 한계비용이 낮기 때문에 독점 가격은 사회적 최적량에 못 미치는 불완전한 경쟁시장임

□ Baumol과 Bowen은 이것을 ‘비용질병(cost disease)’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예술

의 만성적 적자를 ‘수지 격차(income gap)’라 칭함. Baumol과 Bowen에 의해 제시된 공연예술부문의 ‘생산성 격차’와 ‘비용질병’이론은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보조 또는 민간의 기부, 후원 등을 정당화 시켜주는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어 왔음

□ 한편 문화예술이 갖는 기능적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공공재

- 공공재(public goods)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non-rivalry)이 높은 재화와 서비스를 말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문화예술부문의 활동은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가지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문화예술은 창조적인 기술혁신의 원천으로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유지해가는 중요한 사회적 공동자산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음(임상오, 1997).
- 문화예술을 인프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공재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 정보의 비대칭성

-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란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의 일부가 거래일당사자에는 알려져 있으나, 다른 당사자에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말함
- 문화예술의 경우 수요가 후천적으로 배워서 익힌 지식, 취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예술부문에서 정보의 부족(무지, 무경험)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의 수요가 예술적 경험, 교육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보부족으로 인한 수요부족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정보의 부족을 보완하여 문화예술의 수요확대를 위해 향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이 부문의 기호를 형성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함(윤용중, 2002)

－ 외부성

- 외부성(externality)이란 특정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중요

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 대한 청산이 시장구조를 경유하지 않는 현상을 말함

-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공공지원은 수혜 당사자 외에 여러 부분에 대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킴(윤용중, 1997)
- 문화유산이란 그 재화의 소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재화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학작품, 악보, 미술작품, 건축물 등 유형의 형태로 보존되는 예술품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의 훌륭한 기술, 연기 등의 무형의 것도 포함됨
- 후대의 자손들은 문화유산의 소비에 대한 선호를 표출할 수는 없으나, 이런 문화유산을 생산(소비)하는데 드는 비용(관람료)에는 다음 세대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임
- 이런 외부효과의 관점에서 문화유산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사회문화적 차원의 시장실패

- 상업주의로 인한 질적 저하

-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를 시장에 방임해두면 질적 저하가 초래될 수 있음
- 수준 높은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소비자들과 높은 향유능력에 의지하며 창조활동의 수준을 높여갈 창작인들이 필요함
- 문화 활동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만 작동되면 상업주의로 치우칠 가능성이 커짐
- 이 경우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수요공급은 별 문제 없을지 몰라도 질적인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움
- 이윤동기만 강조한다면 장기적으로 고급문화는 퇴출되고 저급한 문화가 양산될 위험이 있음

- 전통문화의 쇠퇴

- 현대 대중문화에 비해 전통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매우 낮음. 전통문화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시장원리에 맡겨두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사명감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이외에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려는 사람들이 없게 되고 결국 전통문화의 보전은 어려워 시간이 지날수록 전통문화는 사라지게 될 것임

□ 문화생산·소비의 불균형

- 문화의 소비측면에서 지역에 따라 혹은 소득수준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에 있어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함.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감상능력은 어린 시절부터 경험과 교육으로 인해 형성됨
- 이러한 문화향수능력을 획득할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약받게 된다면 결국 문화에 대한 욕구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함
- 문화의 소비에 있어 지역적 불균형을 보면 문화예술의 생산, 유통, 소비에 있어서 대도시와 지방과의 격차가 매우 심함
- 문화예술 단체나 시설의 운영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자연히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 소득재분배

- 경제가 발전하면서 문화예술의 소비는 상당히 보편화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소득, 교육수준이 중간이상인 계층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문화예술의 소비에 참여할 수 있다면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음
- 즉, 문화예술의 향수에 있어서 교육, 소득 수준 등의 차이에 의한 불균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갖는 재화라면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한다면 이런 정부의 지원활동은 분배적 측면에서 정당화될 것임

□ 정치적 차원의 시장실패

- 문화예술계의 낮은 영향력

- 국가적 정책결정 과정에서 문화적 가치는 제대로 존중되지 않았음. 심지어 과거 문화예술이 특정 정권의 홍보를 위한 선전도구 정도로 무시되던 때도

있었음

- 아직까지는 타 이익집단보다는 영향력은 낮으며, 배정된 예산액도 은혜적·시혜적 차원의 예산이 대부분이며 그 수준도 극히 미미한 수준임(김정수, 2010)

- 문화예술계 내부의 불균형적 정치적 영향력

- 정치적 불평등은 문화계 내부에서도 존재함. 문화예술계 내부적으로 어떤 집단은 대단히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또 어떤 집단은 정책적 배려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김정수, 2010)

□ 한편 해외의 문화지원방식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지원은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지원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약서를 기반으로 함.
-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영역별 개별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팔길이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문화의 공적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지원에 있어서도 영국은 독립위원회 성격을 갖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 형태의 문화예술영역별 센터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문화예술 지원에 필요한 자원 조성에 있어서도 영국은 포괄보조금 형태의 국고 보조금과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반면, 프랑스는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음
- 영국의 문화예술지원은 예술위원회가 주도하는데, 중앙정부와 예술단체 간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함. 예술위원회는 필요한 예술활동의 대상 및 영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함
-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정한 집행을 위해 지원단체 결정,

지원 금액 산정, 평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예술단체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예술창작 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나, 예술가사 회보장제도는 법적으로 잘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일반직장인과 유사한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음. 따라서 예술가들의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여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
- 프랑스의 문화예술지원은 영역별 센터가 주도하는데, 예를 들어 조형예술 영역에서는 국립조형예술센터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국립조형예술센터의 지원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 관련 민간기관 지원, 관련 전문가 지원 등이 있음
- 즉, 프랑스의 문화예술지원은 예술가나 예술단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관련 민간기관인 화랑, 출판사, 영상물 제작사나 관련 전문가인 예술작품복원가, 비평가, 이론가 등도 포괄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고객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있음
- 문화예술지원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영국의 경우 각 지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만,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보면,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예산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프랑스는 국가주도적 문화예술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1982년 지방분권화 이후 지자체의지원금과 역할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서 문화통신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레이옹 문화사무국(DRAC)'과 '데빠르트망 건축및문화유산국(SDAP)'이 지원, 기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함
- 민간의 문화예술지원활동은 영국은 전통적으로 공적 자문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민간 부문의 예술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A&B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음
- A&B는 예술계에 민간재원 파트너십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예술계에 활발한 교류를 위해 컨설팅, 교육, 정보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민간부문의 문화예술 지원 역할이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 제한적이었음

- 문화분야 수요에 비해 국가예산 증가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점차 기업과 개인의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함. 즉, 2003년에 ‘메세나, 재단, 협회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공익재단 형태의 ‘기업메세나협의회(ADMICAL)’가 기업메세나를 대표함

<표-20> 한·영·불 문화예술 지원체계 비교

	한국	영국	프랑스
지원원칙	공공성, 효율성	발견이 원칙	국가주도적 공공서비스 원칙
관련법	문예진흥법 국민복권법	직접적 근거가 되는 법률 없음/정부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협약서(funding agreement), 국민복권법	지방분권법 영역별 개별법
기금명	문예진흥기금	국고보조금 (grant-in-aid), 복권기금일부	국가예산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문화통신부
지방정부 (연방정부)	11개 + 23개 공공문화재단	4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레지옹 데파르트망 꼬뮌
주요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 Council England	국립조형예술센터 등
메세나	한국메세나협의회	Art & Business	기업메세나협의회 (ADMICAL)
메세나 관련법	없음	없음	있음 (메세나, 협회, 재단에 관한 법률)
메세나 역할	주로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공개	공개 외에 예술과 기업교육, 출간, 컨설팅, 세미나, 연구, 이벤트 등 활성화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홍보 / 관련 법률과 제도 연구 /사회복지·의료보건 등 포함

- 재정융자제도란 특정 대상자나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출 등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보통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수혜자에게 시장보다 우월한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재정 지출 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지출을 의미하는 재정·융자는 재정 기구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이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둔 자금을 일정한 계획에 따라 융·투자하는 정부의 재정·금융적 활동을 가리키기도 함
- 구체적으로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융자금을 민간산업이나 정부정책 사업에 출자 또는 융·투자의 형태로 임차관계를 맺는 지출 즉, 기간산업의 육성, 농업 구조의 개선, 수출산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자금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함
- 재정·융자제도는 민간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재정·융자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재정정책의 한 수단이었음
 - 그러나 민간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재정·융자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재정·융자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완적 역할로 개선되어야 함
- 어떤 사업을 위한 투·융자방식이 재정정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치평가(valuation)임
 - 예컨대, 콘텐츠 산업은 높은 위험(risk) 투자분야라는 민간의 인식, 물적 담보 부족 등 업계 영세성으로 인해 투·융자가 위축되어있음⁴⁾ 따라서, 보완적인 측면(complementary manner)에서 투·융자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졌음
- 타 산업에서의 투·융자방식의 자금지원 형태는 주로 수혜자가 기업인 경우에 활발하게 개진되어왔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투·융자복합 금융자금 지원’이 대표적인 형태임
- 투·융자방식의 자금지원 형태에 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접목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함

4) 2013년 문체부예산기금운용계획 중 일부 발췌함

제2절 보조금 지원방식

1. 한국연구재단

(1) 법적 근거

- 한국연구재단(이하, 'NRF')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립된 공공기관임
- 설립근거는 한국연구재단법에 근거하고 있음
- NRF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 및 역할을 하고 있음
 - 1.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 2.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 3.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 4. `학술 및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 5.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 6.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 7.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2) 예·결산 현황

- NRF는 학술 및 연구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 분야에 따른 지원방식과 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기관고유사업(출연금)을 제외한 총 25개의 분야(4조 9,358억 82백만 원)로 구분하여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⁵⁾

사업구분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01.기관고유사업(출연금)	32,833	34,168	35,469	37,743	40,201	40,077
02.과학기술혁신지원	0	0	3,185	4,921	4,894	6,417
03.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513,305	608,606	645,430	737,776	783,375	782,473
04.기초연구진흥	748,020	770,827	830,324	1,016,710	1,249,189	1,286,422
05.우주개발진흥	365,475	418,882	505,879	493,717	416,609	426,244
06.원자력진흥	291,543	306,770	243,314	232,452	208,832	216,094
07.국민생활개선	0	0	0	0	0	46,933
08.과학기술기반조성	51,120	57,573	33,947	15,793	20,354	249,713
09.과학기술인력양성	28,400	28,982	26,596	22,449	18,893	40,405
10.과학문화장달	34,368	30,603	17,056	16,753	18,942	19,245
11.정보통신융합산업	0	0	0	0	0	7,000
12.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8,200	9,594	20,316	30,996	31,952	26,972
13.공공연구성과활성화	0	0	52,938	52,409	94,421	13,397
14.과학기술국제협력	78,288	81,090	45,033	39,291	39,443	38,041
15.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영	2,552	2,329	2,399	2,233	1,939	4,594
16.과학기술기금지원	525	352	423	295	273	741
17.대학교육역량강화	771,893	909,945	1,006,099	1,085,684	986,425	1,306,209
18.학술연구역량강화	562,954	569,156	575,053	621,888	681,695	746,462
19.산학협력역량강화	251,379	314,850	296,451	343,725	307,738	385,039
20.국제교육협력증진	1,796	1,997	1,411	1,167	4,119	5,149
21.SW산업활성화	0	0	2,421	2,253	2,253	2,253
22.다문화학생교육지원	75	877	945	1,189	1,174	15
23.기타수탁사업	7,363	4,452	5,961	43,945	23,153	48,009
24.기술개발복권운영비	20	12	17	9	8	0
25.신기술투자조합출자	6,686	2,819	0	2,819	0	0
26.원자력안전	551	533	11	0	0	0
27.대학교육역량강화(미래부)	6,075	5,590	0	0	0	0
28.연구공동체활성화(미래부)	11,423	11,890	0	0	0	0

5) 한편, 문예위는 2018년 말 현재, 총 4개의 분야, 3,436억 56백만 원의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3) 사업방식

□ NRF가 운용 중에 있는 지원방식 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따라서 본 절에서는 NRF의 지원방식을 통해 문예위의 지원방식 개선 및 다변화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첫째, 지원 분야에 대한 선정과 지원방식이 정립되어 있음. 지원 분야에 대한 선정과정은 명확한 사업목적과 세부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중복 수혜가능성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연구분야에 대한 발전가능성, 발전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됨
- NRF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를 보면 문예위와 유사한 문제제기가 발생하였고(기초연구사업 세부사업 별 지원 체계 불분명) 현재, 수월성 중심의 우수연구 지원과 안정적 연구지원의 두 트랙으로 이분화 하였음

현행(As is)	개선 방안(To be)
<p>• 기초연구사업 세부사업 별 지원 체계 불분명</p> <p><문제> 우수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실질 연구비 지원 한계 및 연구 단절로 인한 연구 공백 발생</p>	<p>• 연구 생애 전주기 동안 연구 역량을 발전시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u>수월성 중심의 우수연구 지원과 안정적 연구지원의 두 트랙으로 체계화</u></p> <p><기대효과> <u>생애 전주기 기초연구 지원 체계 구축</u>으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강화</p>

- 둘째, 이분법적 구분이 어려운 연구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접근이 아닌 ‘문제해결 방법별’ 구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이는 명확한 분야구분(장르구분)이 어렵고 수혜자의 스펙트럼을 확대하고자 하는 문예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셋째, 지원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음.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거나 구분이 필요 없는 사업으로 나누어 연구 성향과 연구의 특징에 따라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음

현행(As is)		개선 방안(To be)	
신흥지역연구지원		인문 사회 연구소	전략적 지역 연구형 ·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등 국가전략적 차원의 지역학 연구 · 지역전문가 육성
토대연구	사전학		순수학문 연구형 · 인문사회 기초학문 분야 및 해외학술서 번역 및 DB화
	총서학		문제 해결형 ·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의 인문사회과학적 해결책 모색 · 이공분야 시 등 신기술· 대학문과의 융복합연구
	자료학		
대학중점 연구소	인문사회		교육 연계형 · 대학인문사회교육· 기초교양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차세대 연구자 육성
	ASK		
	번역		
정체중점			
<문제> · 사업간 유사·중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저하		<기대효과> · 사업 구조 통합과 지원 대상에 따른 유형 다양화를 통한 유사과제 지원 방지 및 사업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대 예상	

- 이러한 기준은 문화예술 분야와 같이 정형화되지 않은 분야에 적용시킬 경우, 수혜자의 확대와 효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임



2. 예술경영지원센터

(1) 법적 근거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임
-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 임⁶⁾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음
 - 1. 예술 유통구조의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 2. 예술기관·단체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 3. 예술기관 경영 인력 양성 및 지원
 - 4. 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 5. 국내외 예술시장정보의 구축·관리·활용
 - 6. 서울아트마켓 개최 및 운영
 - 7. 기타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예·결산 현황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기관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총 10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2018년 말 기준, 212억 7천 3백만 원의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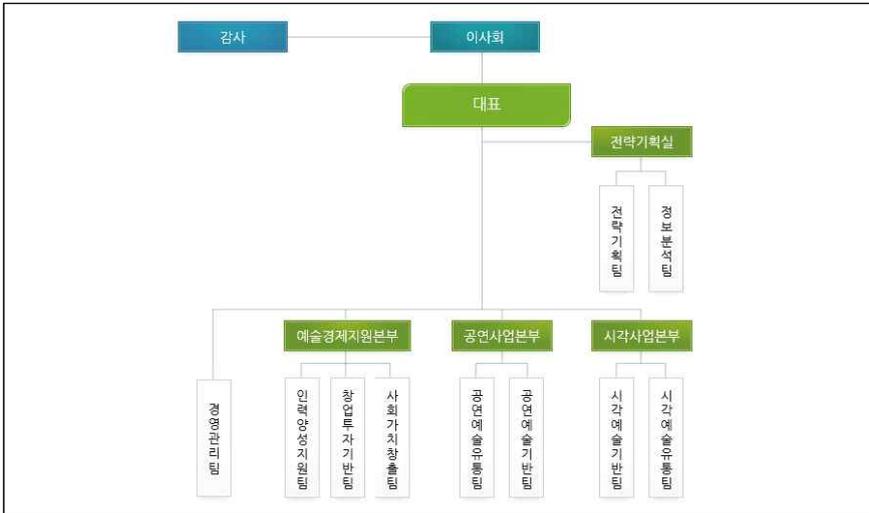
사업구분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예술경영지원센터 인건경상비	500	815	833	1,898	2,011	2,320
예술단체 전문화 지원	772	752	647	404	367	1,048
예술경영 인력양성	2,350	2,320	950	1,090	560	490
예술시장 조사연구	690	690	1,290	1,076	979	786
예술행사 평가	400	450	700	491	147	282
공연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	4,754	12,505	9,347	5,916	4,010	3,770
시각예술분야 대중화 및 해외진출 지원	620	4,025	5,915	6,046	5,922	6,378
예술의 산업화 추진	-	-	-	1,388	2,479	5,452
기타	1,600	6,748	456	368	163	14
자체사업(위탁용역 등)	358	339	774	1,880	4,535	3,592

(3) 사업방식

- 문예위의 사업은 기금별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경우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음
- 문예위의 위 사업구분별 세부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 문학, 시각, 공연예술 등 순수예술 분야 창작활성화를 위한 창작 지원 및 기반 조성, 민간 예술가 및 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및 해외 주요 예술기관과의 대형 교류 프로젝트 추진
 - 국고수탁사업
 -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인생나눔교실 운영
 -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인문360°),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1주년 기념행사,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 국민체육진흥기금 수탁사업
 -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예술기록물DB 구축, 도서관상주작가지원, 원로예술인공연지원
 - 고용보험기금 수탁사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4) 인력운용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사업분야 중에서도 공연사업본부와 시각사업본부로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예술분야 전문화 지원, 인력양성, 평가는 예술경제지원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3. 창업진흥원

(1) 법적 근거

- 창업진흥원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며,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서비스혁신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창업분야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써 기관의 사업구분을 통해 문예위의 사업지원 방식에 세분화와 확대를 위해 살펴보고자 함
-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 임
- 창업진흥원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음
 - 1. 유망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촉진
 -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 3. 창업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 4.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정책개발
 - 5. 국내외 창업진흥 우수사례 조사·연구 및 전파
 - 6.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 교육사업
 - 7. 중소·벤처기업 창업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개발

(2) 예·결산 현황

사업구분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창업선도대학	49,928	64,078	70,609	99,092	90,117	1,572
창업사업화지원	57,158	58,686	85,645	126,171	299,724	316,210
창업자변화대	21,033	36,272	32,393	57,031	34,134	48,611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0	0	0	0	0	48,900
중소지식서비스	39,247	38,482	32,776	0	0	0
중소기업재미지원	0	309	5,689	12,904	14,895	19,775
지역혁신생태계구축지원	0	0	0	5,694	38,513	225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	0	0	0	10	6,405	151
6개월챌린지및액셀러레이터	0	0	0	85	157	0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0	0	0	0	457	104,617
창업성과 확산지원 사업	0	0	0	0	1,176	0
직영 특화 마운영 등	0	2,468	3,032	807	871	323
청년창업창조인턴	5	0	0	0	0	0
신기술창업인프라구축	34	0	0	0	0	0
민간 협력사업(기부금 등)	0	1,100	9,160	7,800	159	638
임대관리 수입(판교, 누림터)	0	0	0	29	838	1,152
세종시육 구축사업	0	0	0	0	0	4,485

(3) 사업방식

- 창업진흥원의 사업구분 특징을 살펴보면 산업구분을 막론하고 창업 그 자체에 초점과 단계별 지원이라는 특징이 있음
 - 예컨대, 창업선도대학, 민관협력 창업자 육성, 신기술창업인프라구축,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지역혁신생태계구축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 창업성과 확산지원, 창업저변확대, 중소기업지식서비스, 중소기업재기지원
-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은 조직구성 또한 단계별로 구축하고 있음
 - 창업촉진 → 창업성장 → 창업기반으로 구성하여 사업구분과 조직구성이 일치되어 있음



- 상기 세 기관을 살펴보면 지원사업의 수혜자의 공평성, 형평성, 수혜자 범위 확대에 관한 몇 가지의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신용보증 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자금지원 정책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한 자금소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
- 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보증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위한 채무 보증을 제공함 보증서를 제공받은 중소기업은 기술성, 사업성 등의 미래가치 평가를 통해 담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음.

제3절 투·융자 지원 방식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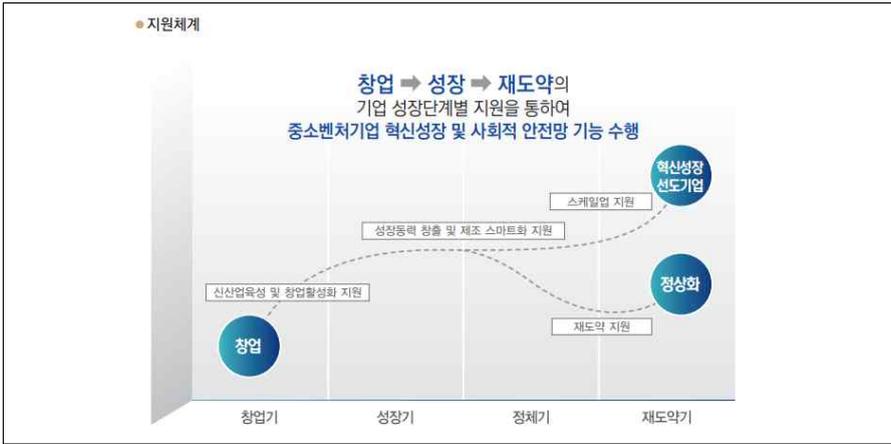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임
- 설립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8조 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창업지원 확대 및 혁신성장 촉진
 - 중소기업 안전판 기능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제도 혁신 추진
 - 글로벌화 및 마케팅 지원
 - 수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연계지원
 - 해외직접판매 지원체계 구축
 - 해외진출기업 지원 기능 확대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CEO 육성
 -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 매칭 및 양성
 - 내일채움공제 활성화로 기업-근로자 간 상생 견인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 CEO 확보

(2) 예·결산 현황

사업구분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168,655	1,849,098	2,172,991	1,767,563	1,513,063	1,372,937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350,000	376,035	363,312	587,003	602,656	8,144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15,688	16,202	17,424	19,814	18,527	19,774
창업환경조성	1,858,912	2,036,496	2,193,325	2,444,675	2,468,933	2,757,373
벤처기업활성화지원	272,932	418,878	359,609	1,088,679	732,391	242,066
중소기업인력지원	28,835	23,618	20,686	19,508	37,427	31,069
중소기업육성지원	3,923	3,654	3,743	3,962	3,895	2,274

(3) 사업방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투·융자 지원을 총 3조 6,700억 원의 규모로 수행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투·융자지원은 크게 이익공유형과 성장공유형으로 구분됨
 - 이익공유형은 대출 후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임. 단,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익연동에 따른 이자는 없고 고정이자만 납입하는 방식
 - 성장공유형은 기업이 전환사채 등의 주식연계 회사채를 발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자본금 확충하는 방식임
 - 추가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의 부합성에 따라 6개의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융자방식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간접대출 또는 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을 수행하며,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7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하도록 규정함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지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단계진입 및 지속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구조개선 · 정상화/퇴출/재창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 혁신창업지원 - 일자리창출촉진 - 개발기술사업화 · 투융자복합금융 - 이익공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기반 - 혁신성장유망 -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 - 성장금융형 - 스케일업금융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도약지원 - 사업전환(무역조정) - 재창업 - 구조개선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애로및재해/일반경영안정지원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하며,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하며,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를 시행하고 있음
- 융자지원방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단계	자금신청 前	자금신청 時	자금지원 後	
			정상기업	부실우려기업
진단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창출 (공모형) 총합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진단 · 제조혁신역량진단 (신설, 총합진단) · IP담보/성장금융형자금 신청기업 총합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창출 (일반형) 총합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예방형 총합진단 (신설)

금리 우대 사항

-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최대 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불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수출성공) 또는 0.4%(수출향상)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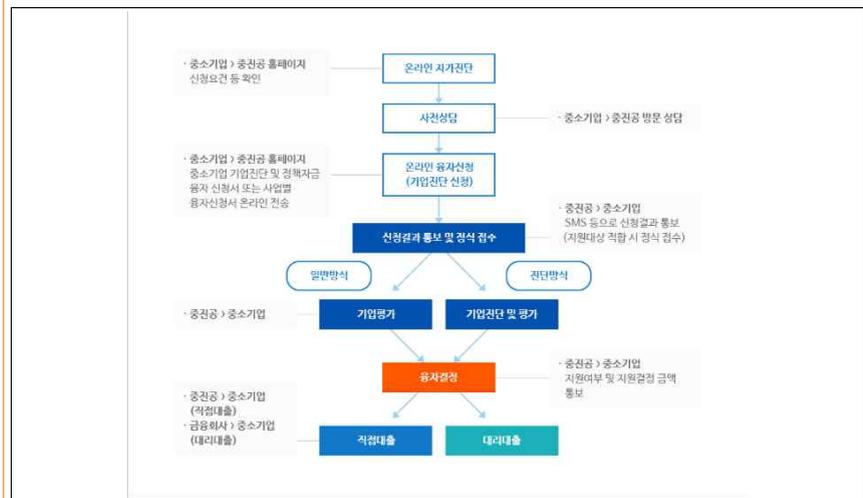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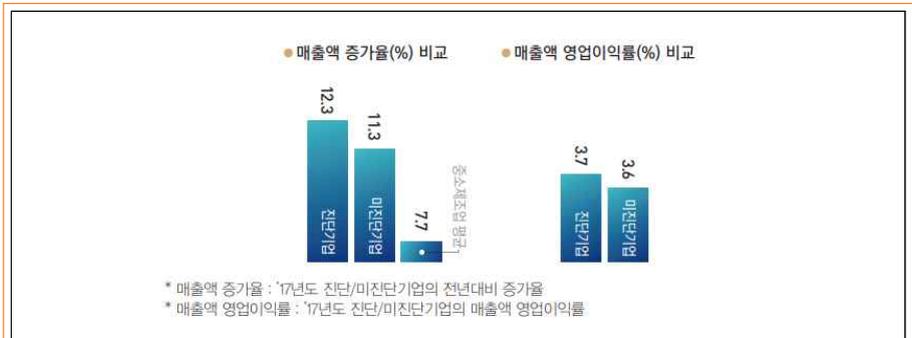
구분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원 제외)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원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이상 증가

※ 이자환급(고용, 수출)은 1년간 한시적용하여 1년간 납입이자금액이내 지원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은 제외

- 관련 구비서류

구분	종류	서류명
사전상담시 제출서류	6종	자가진단표,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융자신청시 제출서류	2종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현장실태조사시 확인서류	5종	금융거래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주주명부, 산업재산권규격표시 인증기타 인증서류 등 사본 *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 견적서(계약서), 카탈로그, 건축계약서 등 * 사업별 추가제출서류 : 수출실적증명원, 폐업사실증명서 등

- 한계점 : 중소벤처기업 투·융자방식은 명확한 성과평가가 가능한 반면, 문화예술분야의 유사한 잣대의 적용이 매우 어려움
 - 중소벤처기업 투·융자방식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으로 측정가능한 반면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성과(performance-based)평가가 다른 방식으로 측정되어야 함
 - 재정투입이 되므로 측정방법에 관한 후속적인 고민이 필요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은 시중은행이나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나,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 함께 지원 받은 업체가 지원 대상에 다수 포함됨
- 직접대출은 신용보증이나 대리대출을 통해서도 시중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업체를 중점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는 지원방식임
 - 2012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은 업체 5,450개 중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이나 대출로 지원을 함께 받은 업체는 51.3%인 2,794

개임. 직접대출 지원방식의 취지를 보거나,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높게 나타남

- 또한 동 51.3%의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용자액이 정책금융기관의 총 용자지원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5.5%로 높지 않았음
- 따라서 다른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거나,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용자업체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
- 직접대출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은 지원방식이 가지는 취지 및 지원효과를 고려할 때, 시중 은행이나 다른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콘텐츠진흥원

(1) 법적 근거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설립근거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근거함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요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음
 - 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 4.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 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 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 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유통·이용촉진
 - 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 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 지원
 - 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 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 14. e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 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2) 예·결산 현황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의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 문화콘텐츠 산업기술 지원의 순으로 높게 배정되고 있음

(단위 : 백만 원)

사업구분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조성	-	45,912	122,072	83,450	97,752	106,850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	59,740	90,788	117,790	106,775	154,032
문화산업기관지원	18,917	20,951	26,012	24,176	22,056	-
문화콘텐츠 산업기술지원	46,095	51,910	58,771	53,516	54,204	53,767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19,312	36,939	19,230	34,827	18,913	25,432
국어문화진흥	20	300	300	300	300	-
기초예술역량 강화	-	-	90	5,550	-	-
문화콘텐츠진흥	60,384	-	-	-	-	-
게임산업 육성	21,978	-	-	-	-	-
기금재원 사업	300	8,500	300	-	-	-
기타재원 사업	29,342	10,917	17,249	16,341	15,848	14,876
자체재원 사업	10,732	12,679	13,646	7,482	10,247	11,230

(3) 사업방식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기업 투융자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투융자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국내투자자 대상 장르별 투자 트렌드 발굴·공유기회 제공을 위한 투자자 워크숍 개최 및 국내외 콘텐츠 투자자 풀 구축 도모, 프로젝트 및 기업 투자와 펀딩 등을 진행하는 콘텐츠산업 장르별 설명회(KNOCK; 콘텐츠 피칭라운드) 개최 하여 투자유치를 꾀하고 있음
 - 2019년 콘텐츠기업 투자지원, 2019년 콘텐츠기업 융자지원, 2019년 금융지원 기반조성 등을 시행 중임
 - 2019년 콘텐츠기업 융자지원
 - 완성보증추천위원회를 통해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보증부 융자 추천
 - 보증 지원된 콘텐츠 중 제작일정 및 자금조달, 자금집행, 상환 등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된 콘텐츠 또는 완성보증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완성보증 업체 실태 및 성과조사 실시
 - 콘텐츠가치평가를 통해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부 융자 추천
 - 기획단계의 콘텐츠에 대한 보증상품인 '기획보증' 상품에 대한 보증부 대출 추천
 - 2019년 금융지원 기반조성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에 의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변경등록 포함) 사항 검토 및 등록증 발행
 - 문화산업전문회사 실태/성과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전수조사 실시 및 사후조치 수립
 - 은행, 보증기관, 창투사 등 금융기관 종사 인력을 대상으로 콘텐츠 관련 금융
 - 교육을 실시하여 콘텐츠 전문 캐피탈리스트 양성(5회 내외) - 콘텐츠산업 정책 금융환경 조사, 정책재원 확대방안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 콘텐츠금융 체계 구축 필요성 관련 화두 제공 및 정책금융 재원 확대방안
- 논의를 위한 콘텐츠금융 활성화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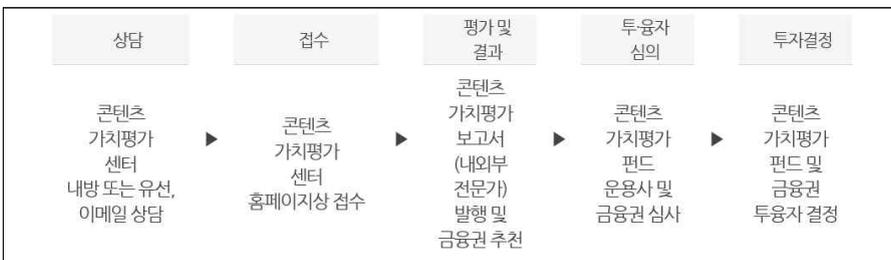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투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가치평가 센터를 운영함

- 조직 내에 콘텐츠가치평가센터를 운영하여 콘텐츠가치평가 및 각 장르별 산업 정보 수집·이용·관리 전산화하는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투융자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산업 정보 제공을 통해 콘텐츠 제작·기획 단계의 투융자 활성화 도모

□ 구체적으로 콘텐츠가치평가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콘텐츠 가치평가모형 개발	공연(유지컬) 및 융복합 2개 장르 모형 연구 개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	영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4개 장르 가치평가 수행
산업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가치평가 및 산업정보 통합시스템 고도화, 산업정보 시스템 운영 가치평가 모형(영화, 게임) 수정·갱신
콘텐츠 가치평가 정책연구	콘텐츠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관련 정책 연구
콘텐츠 가치평가 센터운영	제도 홍보 및 법률(회계) 자문, 일반경비 등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투융자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3.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에 대한 용자지원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 ‘관광기금 용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자금은 크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됨
 - 시설자금(관광호텔업 등 34개 업종)
 - 신축·증축 :상·하반기 각 150억 원 이내 용자(중견기업, 특급호텔은 40억 원 이내 용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신청(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 개·보수 :상·하반기 각 80억 원 이내 용자(중견기업, 특급호텔은 20억 원 이내 신청)
 - 운영자금(일반여행업 등 38개 업종)
 - 업종에 따라 1억원 이내에서 10억원 이내 신청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자예산 규모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16년 일몰)」에 따른 시설자금 증가 등으로 2014년부터 대폭 증가
 - ‘12년 2,787억원 → ‘13년 3,120억원 → ‘14년 5,720억원 → ‘15년 6,800억원 → ‘16년 6,200억원 → ‘17년 6,100억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용자자금을 산업은행에 대하(기금대여)하며 다시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에 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 즉, 간접금융임
- 2016년의 경우 총지원액 6,200억원 중 시설자금이 5,126억원(82.7%), 운영자금이 1,074억원(17.3%) 이 중 관광호텔업은 시설자금에서 3,766억원(60.7%), 운영자금에서 641억원(10.3%)을 지원 받음
- 여행업은 운영자금에서 226억원(3.6%)을 지원 받음
 - 시설자금의 대부분은 “관광호텔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가족호텔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이 일부 비중을 차지
- 운영자금 용자는 여행업과 관광호텔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부터 관광호텔업이 총 지원액의 절반을 차지

- 대부분의 투융자방식의 지원방식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존재함
 - 숙박업체 중심 편중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체 지원 미흡, 융자제도 운영 체계 및 인프라 미비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됨

4.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을 통해, 신산업 투자, 기술이전·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산업현장 애로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전년(955억원) 대비 83억 원 증액한 1,038억 원(12개 사업)을 투자하였음
 - 구체적으로 첫째,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신산업 분야를 중점 지원(167억 원)
 - 둘째,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현장의 시급한 당면현안 해소(50억 원)
 - 셋째,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R&D)재발견 프로젝트사업’은 주관기관을 기존 출연연 등에서 기업으로 변경하고 전년(110억 원) 대비 175억 원 증액한 285억 원으로 대폭 확대
 - (우수이전사례) 한국기계연구원이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불량화소 복원기술을 ‘14년말 (주)에이치피케이에서 이전받아(이전시 5천만 원 지급) ’15년 말 사업화성공(4억 원 매출발생)
 - 넷째,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인력 양성·공급 및 청년·여성의 실업 해소 등을 위해 산업현장의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 특히,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사업(53억원)’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연구현장에 공대생을 6개월간 인턴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 도에는 300명을 지원하여 86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 달성함

5.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대출사업

-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디지털방송 시설 구축, 인건비 체불해소 등 콘텐츠산업 발전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기술평가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임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용자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 연이율은 2017년 2.01%이며 시중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용자추천 대상기업: 케이블 TV 채널 사용사업자, 독립제작사 등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용자지원(15억원), 디지털시설구축 용자지원(10억원), 방송 프로그램 인건비 용자지원(5억원)인데 인건비는 1년이 용자기간이고 나머지는 2년 동안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임

- 자금용도는 운전자금: 프로그램 제작비용자지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용자지원과 시설자금: 디지털시설구축 용자지원사업인데 사업장확보자금은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되고 있음

□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1~2년(일시상환), 시설자금 2년(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어 비교적 단기로 대출되는 자금임

제4절 신용보증방식의 지원방식

- 신용보증제도는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2,250개 이상의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이중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대출 손실을 정부가 인수한다는 점에서 크게 공적 보증제도에 속함
 - 공적 보증제도는 운용주체에 따라 공공기관 보증제도, 상호보증제도, 용자보증제도 등으로 나뉘며,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이중 공공기관 보증제도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 공공기관 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독립된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심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증대상이 폭넓고 공신력과 보증금액이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증기관, 중소기업, 금융기관이 각각 별개의 기관이므로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에 매우 높음

구분	공공기관 보증제도	상호보증제도	용자보증제도
운용주체	독립된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등)	기업 단체 (공제조합)	은행
보증주체	독립된 보증기관	기업단체	은행과 정부 공동
보증대상	불특정 기업	회원 기업	불특정 기업
공신력	대	소	중
보증금액	대	소	중
감사기관	정부, 독립된 보증기관	정부, 회원기업 상호감시	정부, 은행
운용국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	독일 등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 등 미주국가

자료 : 신용보증기금, 「세계의 신용보증제도」, 2006

-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GDP 대비 신용보증규모는 상호보증제도나 용자보증제도 형태의 다른 나라의 신용보증규모 보다 큰 편임
-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신용 보증 규모는 일본, 대만 등 같은 형태의 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예컨대 GDP 대비 신용보증 규모는 2005년 현재 한국 및 일본이 5.7%, 대만이 3.3%, 독일 및 프랑스는 0.23~0.33%, 미국, 영국, 캐나다는 0.04~0.14%로서 한국과 일본의 신용보증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일본의 보증 제도는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보증 규모는 일본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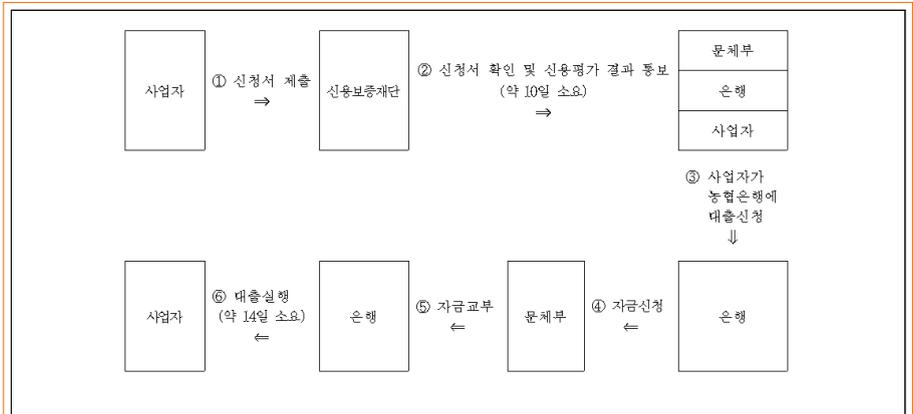
구분	공공기관 보증제도			상호보증 제도		용자보증 제도		
	한국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캐나다
신용보증 규모	46,103 (십억 원)	28,796 (십억 엔)	474 (십억NT\$)	5,038 (백만 €)	5,535 (백만 €)	16,520 (백만\$)	481 (백만 €)	1,026 (백만C\$)
대GDP 비율	5.7%	5.7%	3.3%	0.23%	0.33%	0.14%	0.04%	0.08%

주 : 2004년 기준(한국, 일본, 대만은 2005년 기준)
 자료 : 신용보증기금, 「세계의 신용보증제도」, 2006

- 신용보증제도는 물적 담보가 없으면 사업자금의 조달이 힘든 금융환경 하에서 효과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신용보증은 중소기업의 대출기회를 확대시켜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동시에 주요 경기변동 때마다 국가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공정책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여 왔음
- 이처럼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차별적인 금융격차를 일정부분 해소시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중소기업 금융보완 정책인 동시에 생산증대, 고용창출, 경기변동 완충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중소기업 정책 수단임

1. 문화체육관광부

- 3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에 신용보증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서 4~8등급의 중저신용 관광업자를 대상으로 연리 1%대,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음
- 업종별 신청자격과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단,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휴양콘도미니엄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야영장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관광공연장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국제회의시설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국제회의기획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용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외국인환자 유치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 최근 2년이내(* 용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기타유원시설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관광식당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

융거래확인서

-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에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7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관광순환버스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관광펜션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한옥체험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관광사진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사진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관광유람선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관광지원서비스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2.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임

사업구분	2014년결산	2015년결산	2016년결산	2017년결산	2018년결산	2019년예산
문화콘텐츠산업진흥환경조성	-	45,912	122,072	83,450	97,752	106,850
문화콘텐츠산업육성	-	59,740	90,788	117,790	106,775	154,032
문화산업기관지원	18,917	20,951	26,012	24,176	22,056	-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46,095	51,910	58,771	53,516	54,204	53,767
방송영상콘텐츠및광고산업활성화	19,312	36,939	19,230	34,827	18,913	25,432
국어문화진흥	20	300	300	300	300	-
기초예술역량강화	-	-	90	5,550	-	-
문화콘텐츠진흥	60,384	-	-	-	-	-
게임산업육성	21,978	-	-	-	-	-
기금재원 사업	300	8,500	300	-	-	-
기타재원 사업	29,342	10,917	17,249	16,341	15,848	14,876
자체재원 사업	10,732	12,679	13,646	7,482	10,247	11,230

- 콘텐츠 산업에서도 문화예술 사업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자금조달에 제약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자금지원 방식을 보완하고자 가치평가가 수반된 융자사업과 함께 보증사업을 고려하고 있음
- 콘텐츠 산업에서의 자금조달 시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자금조달 방식이 산업을 막론하고 물적 담보 위주의 대출심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임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자금지원 방식에서 콘텐츠가치평가와 연계된 정책금융제도를 고려하고 있음

(단위: %, n=350)

구분	사례수 (명)	카드로운 대출 심사	과도한 담보 (부동산 등) 혹은 보증 요구	대출액 및 계부계표 중심 기준	신용 대출 관련	높은 대출 관련	예적금 가입 요구	기타	없다
전체	350	58.3	50.9	31.7	24.3	23.4	9.7	0.3	2.3
디지털콘텐츠 (CG, CT, 가상현실, 모바일앱 등)	73	47.9	52.1	26.0	19.2	26.0	8.2	-	5.5
게임	57	56.1	64.9	36.8	24.6	15.8	10.5	-	1.8
캐릭터	54	70.4	38.9	31.5	13.0	16.7	7.4	-	1.9
광고	46	71.7	43.5	41.3	32.6	37.0	13.0	-	-
방송	28	46.4	78.6	25.0	35.7	21.4	17.9	-	-
애니메이션 (만화제외)	21	71.4	52.4	23.8	28.6	38.1	9.5	-	-
공연 (연극, 뮤지컬 등)	21	42.9	66.7	23.8	23.8	23.8	4.8	-	4.8
기타 (만화, 영화, 음악, 출판 등)	50	58.0	30.0	36.0	28.0	18.0	8.0	2.0	2.0

자료: 콘텐츠 완성보증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기술보증기금(2015)

□ 완성보증을 지원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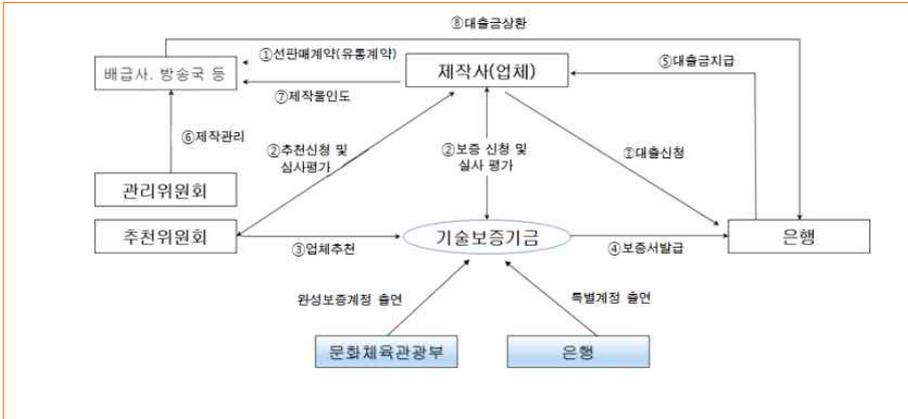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프로젝트성 보증을 위하여 완성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를 운영함

- 문화콘텐츠산업의 보증제도는 2000년대 들어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대 중반 정부주도로 완성보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2009년 2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개정을 거쳐서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동 계정에 대한 위탁운용 및 정부의 출연이 가능한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완성보증제도는 다음과 같은 틀(framework)을 바탕으로 시행 됨

- 완성보증의 경우는 보험과 다른 영역의 상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보험은 수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우발적 위험을 제거해주지만, 완성보증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위험을 회피, 제거,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음⁷⁾



- 완성보증의 대상은 문화콘텐츠의 경우 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방송, 공연으로 9개 장르임. 추천위원회에서는 신청 프로젝트의 완성 및 흥행 가능성, 제작자금 조달, 제작 역량 등을 심의하여 신청금액으로 기보에 완성보증을 추천하고, 최종 보증금액은 기보에서 심사하여 결정함
-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프로젝트의 완성 및 흥행 가능성에 대하여 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에서 1차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은 심사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 1차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술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이 2차적으로 보증금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완성보증제도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보증제도 지원현황을 2017년 7월까지 누적 건수는 496개의 콘텐츠에 3,556억원의 보증이 제공되었음

(단위: 건수, 억 원)

구분	'09~'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07월		지원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완성계정	66	413	36	250	40	240	67	353	94	529	55	239	358	2,024
일반계정	33	369	14	191	17	262	33	248	38	217	32	244	167	1,531
합계	72	782	48	441	57	502	100	601	132	746	87	484	496	3,556

7) 콘텐츠 기업육성을 위한 콘텐츠 금융지원 정책조사

- 완성보증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인 완성계정과 은행의 특별출연금인 일반계정으로 구성됨. 즉, 일반계정과 은행출연은 같은 것임. 정부는 2009년 제도시행 이후 29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은행은 175억 원을 출연 함

(단위: 억 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정부출연	22.3	23	54.7	-	20	20	50	50	50	290
은행출연	12.5	-	52.5	30	20	-	-	60	-	175
합 계	34.8	23	107.2	30	40	20	50	110	50	465

- 완성보증제도는 분명 문예위의 좋은 참고대상(benchmarking)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함
 - '보증'이라는 제도자체의 위험회피적 성향이 보증대상의 확대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보수적인 용자금액(한도, 대상)이 제약적임
 - 대중성이 높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문예위의 보증수준과 측정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음
 - '보증'이라는 제도에 대한 대상자의 정보 부족과 기피현상이 결과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2009년부터 시행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완성보증제도의 경우에도 완성보증제도를 실제로 신청하여 이용한 사례는 19.4%이며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완성보증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지배적이었음(63.1%).
 - 보수적인 금융기관의 관행의 비추어 볼 때, 특정 분야(장르)에 대한 집중도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완성보증 대상 분야는 9개이지만 실제로 게임, 공연, 방송드라마에 집중도가 매우 높음
 - 완성보증제도는 영세분야에 대한 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액의 크기의 탄력적인 조절이 요구되는 상황임

3. 한국콘텐츠공제조합

-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2014년 본격적으로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개발 및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대여, 이행보증, 채무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0조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은 보험과 경제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며, 2013년 12월 보증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하였지만, 2017년 현재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6가지 유형의 보증상품을 취급함
 - 보증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하고 신청한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가입 심사를 거친 후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입찰보증, 지급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 보증, 채무보증을 운영함

상 품	내 용
입찰보증	도급계약 및 매매계약 등에 수반하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대신 활용
지급보증	도급, 매매, 임대차, 위임, 입차, 소비대차계약, 기타계약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채무이행보증금 및 협약 지원금에 대한 담보를 대신 활용
계약보증	도급계약 및 매매계약 등에 수반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대신 활용
하자보증	도급계약 및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 후 하자 담보책임기간동안 하자보수 또는 보완을 위한 하자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대신 활용
선급금보증	도급계약에 수반하여 지급 또는 전도되는 선금(전도금), 전도 자재대가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를 대신 활용
채무보증	금융기관의 대출계약에서 정한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한 담보를 대신 활용

-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 조합원수는 2013년 189개에서 2016년 6월말 현재 417개로 증가하였으며 출자금은 97.1억 원으로, 이 중 명예조합원의 출자금액이 30억 원이고, 콘텐츠사업자조합원의 출자금액이 67억 원임
- 조합원수는 게임이 107개로 가장 많고, 출자금액으로는 지식정보 분야가 31.41억 원으로 약 5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네이버주의 30억 원 출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 보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6월말까지 1,185건, 972.76억 원의 보증이 이루어 졌음
 - 장르별로는 게임, 애니메이션, 콘텐츠솔루션이 건수기준으로 각각 147건, 116건, 209건, 금액기준으로 205.7억 원, 160억 원, 181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식정보 부문의 경우 건수는 275건으로 가장 많지만 보증실적은 39억 원에 불과해 건당 보증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개, 백만 원)

장르명	2013		2014		2015		2016.6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게임			48	5.273	69	9.841	30	5.451	147	20.565
공연			12	981	32	2.760	16	2.191	60	5.932
만화			4	111	21	1.012	2	192	27	1.314
방송			9	1.814	24	2.541	12	948	45	5.303
애니메이션	1	259.6	28	5.386	61	8.868	26	1.486	116	16.000
영화			9	1.047	14	1.813	6	1.391	29	4.251
음악			13	514	7	90	9	379	29	4.251
출판			38	1.304	30	583	1	30	69	1.917
캐릭터			12	1.343	22	1.333	4	176	38	2.852
지식정보			71	621	149	2.357	55	948	275	3.926
콘텐츠솔루션			45	5.299	90	5.985	74	6.847	209	18.130
패션			1	24	3	87	1	25	5	136
광고			19	1.212	16	1.132	11	1.191	46	3.534
기타			20	1.735	41	3.213	28	4.078	89	9.026
한국관광공사							1	3.405	1	3.405
총합계	1	259.6	329	26.664	579	41.615	276	28.738	1,185	97.276

- 2016년 6월말 현재 보증사고건수는 19건 32억원으로 게임, 영화,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65% 정도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전체에서 건수로는 1.6%, 금액으로는 0.38%의 사고비중을 보이고 있음
-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공연, 애니메이션, 출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용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총 용자규모는 12건, 2.9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융자의 경우 신규조합원에 대해 10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고 보증에 비해 실제 융자규모는 미미함

□ 콘텐츠공제조합의 한계

- 콘텐츠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자립성 약화
 -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나 조합원 확보에 난관을 보이고 있어, 자립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시드머니의 지원필요성이 대두됨
 - 기본자산의 부족으로 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가시화 되는 경우, 보증사고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실 우려가 상존하여 적극적 금융지원에 한계가 있음
- 지속적인 영업 손실
 - 콘텐츠공제조합의 영업수익은 보증수수료수익과 자금대여 이자로 발생
 -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영업비용 증가로 영업 손실이 지속됨.
 - 2016년도 영업비용은 11억2,200만원으로 인건비와 경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단위 : 백만원)

연도	자산	자본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3,740	3,700	40	0	-430	35
2014	9,433	9,244	189	67	-1,067	2
2015	9,351	8,981	370	207	-850	-733
2016	9,287	8,493	793	307	-814	-754

- 콘텐츠공제조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출자금뿐만 아니라 관련 대기업 등의 자금출자 등이 필요함

- 콘텐츠공제조합이 대여, 보증, 출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보증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증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완성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 콘텐츠사업의 보증 필요성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콘텐츠공제조합의 보증은 현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과 경쟁관계가 아닌

보증규모 차별화에 따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공존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함.

- 콘텐츠공제조합은 문화산업진흥기금(이하 문산기금)의 폐지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안정적 재원 확보 실패 등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함
- 영세 조합원의 출자금으로는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출자금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인데 네이버가 출자한 것과 같은 출자를 이끌어 내려면 정부가 매칭으로 출자를 해주는 것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임

제4장

예술생태계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지원방식 다변화 방안

제1절 : 개요

제2절 : 투·융자방식의 접목가능성

제3절 : 신용보증방식의 접목가능성

제4절 : 조직 및 가치평가 방안

제1절 개요

- 본 장에서는 이전에 살펴본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방식 다변화 방법을 투·융자방식과 신용보증방식의 접목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각 장에서 사례를 통해 살펴본 기관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사업타당성을 확인코자 함
- 문화예술분야에서 지원범위와 지원방식의 확대에서의 관건은 ‘분류체계’에 있으며 지원방식의 다변화에는 ‘자금지원방식’을 꼽을 수 있음
 - 그러나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자금지원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지원방식은 아래의 개념 정리는 반복과 연계에 초점을 맞춘 자금지원 방식이 요구됨

[표 IV-1] 편중 유사 개념 정리

구 분	정 의	정책적 함의
중 겹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고 있는 상태	지원사업의 중복의 효율성
반 복	동일한 사업을 연속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상태	연속된 지원사업의 효율성
연 계	다양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상태	기업성장에 있어 지원사업의 단계별 효과성 존재 여부
중 복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동일한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지원받는 것	기관과 금액, 시점, 횟수 등의 반복성

제2절 투융자 방식의 접목가능성

- 본 절에서 투융자 방식의 접목가능성에 대해 타 기관의 사례를 접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사업 개요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15년까지 총 5조 7,418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 말 기준 융자잔액은 2조 5,632억 원 수준임
 - 최근 5년간(2013~2017년) 3,432개 업체에 대해 2조 6,403억 원 융자지원
 - 융자지원 이외에 관광진흥기반 확충, 관광산업 육성, 외래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관광 재정사업에 총 2조 2,207억 원을 지원
- 기금 운용에 관한 종합 심의기구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으며, 기금운용위원회는 당연직 3인, 위촉직 7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로 서면 심의를 거치고 외부 겸직위원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심의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 2004년부터 기금사업의 집행, 평가, 결산, 여유자금관리 등 업무에 민간 전문가를 활용 중에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은 초기 금융부담이 큰 관광시설 확충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데 역점을 둠
 - 목적: 민간 투자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 운영 활성화
 - 규모: 2017년 6,100억원(시설자금 4,800억원, 운영자금 1,300억원)
 - 융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사업예정자) 등 40여개 업종
 - 융자한도: 시설자금 최대 150억원, 운영자금 최대 10억원
 - 융자시행: 반기별 융자시행 공고(6월, 12월), 특별융자(수시)
 - 시설자금은 상시 접수, 운영자금 분기별 접수
 - 융자금리: 중소기업 운영자금 0.75%P 우대금리, 숙박시설 시설자금 1.25%P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기준금리 2.25%(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변동금리 적용)를 기준으로 차감 적용

- • 용자기간
 - 신축증축: 5년거치 8년 분할상환 ~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에서는 투용자사업 시에는 기간 설정에 대한 문학, 시각, 공연 등의 분야의 특성에 맞는 거치 및 상환기간 설정 및 민간 전문가를 통한 투용자사업을 실시함을 고려해볼 수 있음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자사업 예산규모

- 용자예산 규모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16년 일몰)」에 따른 시설자금 증가 등으로 2014년부터 대폭 증가함
- ‘12년 2,787억원 → ‘13년 3,120억원 → ‘14년 5,720억원 → ‘15년 6,800억원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자사업 운영방식

-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용자자금을 산업은행에 대하(貸下)하며 다시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에 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
- 시설자금 : 시중은행에서 용자신청자의 서류 및 대출심사(용자약정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에 자금대하(기금대여) 신청
 - 운영자금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용자대상자 선정 → 시중은행에서 용자대상자에 대한 대출심사 → 문화체육관광부에 자금대하(기금대여) 신청
 - 점차적으로 용자취급은행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산업은행의 기금관리기관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 구분을 살펴보면 직접금융보다는 간접금융을 선택하고 있음. 관리·운용상의 노하우가 있는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이 투용자사업의 활성화와 서류절차가 문화예술종사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투융자지원 방식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투·융자지원은 크게 이익공유형과 성장공유형으로 구분됨
 - 이익공유형은 대출 후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임. 단,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익연동에 따른 이자는 없고 고정이자만 납입하는 방식
 - 성장공유형은 기업이 전환사채 등의 주식연계 회사채를 발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자본금 확충하는 방식임
-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공연분야에서는 이익공유형으로 상품을, 성장공유형은 문학, 시각분야 적용하여 투융자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음

제3절 신용보증의 접목가능성

□ 본 장에서는 이전에 살펴본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례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완성보증의 대상은 문화콘텐츠의 경우 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방송, 공연으로 9개 장르임. 추천위원회에서는 신청 프로젝트의 완성 및 흥행 가능성, 제작자금 조달, 제작 역량 등을 심의하여 신청금액으로 기보에 완성보증을 추천하고, 최종 보증금액은 기보에서 심사하여 결정함
-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프로젝트의 완성 및 흥행 가능성에 대하여 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에서 1차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은 심사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함
 - 1차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술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이 2차적으로 보증금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문예위의 경우에도 장르를 구분하고 가칭 ‘신용보증사업추천위원회’의 기구에서 프로젝트의 제작 역량을 심의하여 기술보증에 완성보증을 추천하고 기보에서 심사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보증’이라는 제도자체의 위험회피적 성향이 보증대상의 확대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보수적인 용자금액(한도, 대상)이 제약적임
 - 대중성이 높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문예위의 보증수준과 측정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음

가.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사례

-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 경우 보증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하고 신청한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가입 심사를 거친 후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입찰보증, 지급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금금 보증, 채무보

증을 운영함

- 보증상품의 활성화나 문화예술인의 구분이 매우 어렵고 콘텐츠산업의 경우 보증사업이 활발할 수 있는 이유는 흥행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춘 상품에 가능한 부분이 많은 반면, 담보가능할 수 있는 측정이 어려운 문화예술의 경우 보증상품의 수요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제4절 조직 및 가치평가 방안

- 투융자사업이나 보증사업 역시 자금지원형태의 일부로써 실현가능성의 관건은 바로 주체의 조직 및 인력구성이라고 봐도 무방함
- 민간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콘텐츠 산업에서는 자금조달 갭(LFG)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때 조달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민간금융시장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대출, 투자 등 목적에 따른 별개의 가치평가(valuation)가 수반되는 정책금융제도를 운용해야 함.
- 문화예술분야는 소비자에게 관람, 이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이 있고, 시장에서 큰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유희 생산설비가 존재할 수 있는 제조업종과 달리 유형의 자산 가치 환수를 통해 일정 정도의 회수도 할 수 없는 독특한 구조임
- 문화예술 제작에 투입된 비용은 대부분 매몰(sunk cost)되는 것으로, 제작인력에 체화된 인적 자본 형태 이외에는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나 대출 자금이 낭비 없이 활용되려면 사전에 정치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평점평가나 질적 평가에 따른 현재의 가치평가 방식의 결과에 대해 평가주체와 피평가 주체인 콘텐츠 제작자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적절한 가치평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투자는 투자 나뉠대로 대출의 경우 대출 나뉠대로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치평가제도가 필요함
- 일반적인 상품의 가치평가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면 완성보증제도와 같은 정책금융에서는 다양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수익을 극대화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생태계 지향적인 가치를 지향하여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의 구축이 필요할 수 있음
- 문화예술산업의 자금조달 갭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세밀한 시장성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기법 혹은 금융상품의 확충만으로 정책금융을 유지할 경우

정부 지원자금의 낭비가 불가피하고, 문화예술산업의 고질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할 수 없음

- 투자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현재 문예위의 인력운용으로는 정성적 평가를 따를 경우에 문제점은 문화예술분야에서 특징적인 완성위험, 흥행위험을 고려한 예상매출액을 도출하기 쉽지 않음
 - 특히 일반 제조업 상품의 가치평가는 유형의 산출물이 남지만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무형의 저작권을 기초로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화예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가치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완성보증제도의 경우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영세 문화예술 분야나 제작 초기단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따라서 문화예술 가치평가의 틀은 투자 목적의 경우에 따라 달라져야 함
 - 대출에서도 한정된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투자와는 다른 융자방식의 가치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례를 보면 자금지원방식의 핵심인 가치평가에 별도의 팀을 운영 중에 있음
- 따라서 자금지원방식의 확대 시, 문예위에서도 별도 인력운용이 요구됨

팀장	○ 팀 업무 총괄
팀원	○ 콘텐츠가치평가서비스 평가담당 ○ 콘텐츠금융 캐피탈리스트 교육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변경, 실태/성과조사 ○ 콘텐츠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팀원	○ 콘텐츠가치평가서비스 평가담당 ○ 콘텐츠금융 지원체계 수립 ○ 금융지원 대외 협업사업 추진
팀원	○ 문화콘텐츠기업보증 기획보증 평가 및 추천 ○ 문화산업완성보증 추천/관리위원회 운영 및 실태조사/성과조사 ○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운영
팀원	○ 콘텐츠가치평가서비스 평가담당 ○ 콘텐츠산업정보 데이터 기획 및 운영 ○ 가치평가 연계 신한류보증 운영 ○ 가치평가 연계 금융상품 기획/금융정책 대응
팀원	○ 콘텐츠가치평가서비스 평가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피칭플랫폼(KNock) 운영 ○ 가치평가 연계 문화산업완성보증 운영 ○ 콘텐츠가치평가 모형개선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가치평가서비스 평가담당 ○ 콘텐츠가치평가 모형개발 연구 ○ 가치평가 연계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운영 ○ 콘텐츠가치평가 모형개선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가치평가서비스 평가담당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관리/운영 ○ 콘텐츠가치평가실 운영 및 장비 관리 ○ 국고교부 및 예산관리, 대관업무 수행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가치평가서비스 평가담당 ○ 투자자 간담회(네트워킹) 운영 ○ 금융지원 대외 협업사업 추진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가치평가서비스 평가담당 ○ 콘텐츠산업정보 수급/데이터 구매 ○ 가치평가-지원사업-IR지원 연계 수요발굴 ○ 콘텐츠가치평가서비스 홍보 및 PR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가치평가서비스 평가담당 ○ 콘텐츠가치평가 모형개발 연구 ○ 콘텐츠금융 포럼 개최 ○ 콘텐츠가치평가 모형개선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가치평가서비스 상담/안내 ○ 기업보증/신한류보증/완성보증 운영지원 ○ 문서관리 및 사업정산 지원, 공통업무 수행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가치평가서비스 상담/안내 ○ 기업보증/신한류보증/완성보증 운영지원 ○ 콘텐츠가치평가 집중평가실 운영/관리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가치평가는 콘텐츠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와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평가로 구분됨

- 콘텐츠 가치평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단일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미함
- 우리나라의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평가는 금융기관들이 투자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영화와 뮤지컬, 방송 드라마 등의 제한된 영역에서만 일부 수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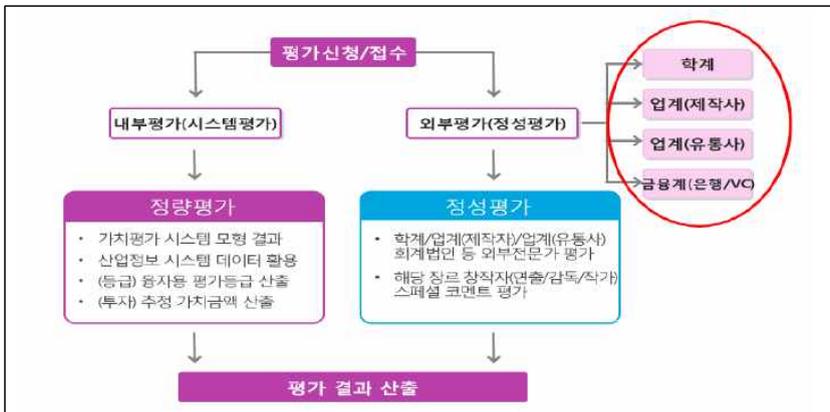
□ 영화나 뮤지컬의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가치평가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은 기업에 대한 투자와 가치평가가 일반적임

□ 콘텐츠 가치평가 구조

- 가치평가는 내부평가(시스템 평가)와 외부평가(정성평가)로 구성됨
- 내부평가는 전산으로 구현된 시스템에 의해 정량적으로 산출됨
- 외부평가는 제작, 유통, 금융, 학계로 구성되는 4인의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반영함

□ 콘텐츠 가치평가: 등급평가

- 가치평가 모형은 융자 및 투자, 기타 콘텐츠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의사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등급 또는 화폐적 가치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절차 및 도구를 말함
- 금융기관이 대출 또는 여신한도(신용공여)를 콘텐츠 제작사에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이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산출함
-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음



□ 완성 이전 단계에 있는 콘텐츠의 성공잠재력의 수준을 상대 평가함

- 영화평가 사례
 - (평가) ① 일반영화와 다양성 영화 구분, ② 융자용, 투자용 구분, ③ 제작초



기-중기-제작완료 구분함

- (등급) AAA ~ D 체계 내의 한 등급으로 대응되어 제시됨
- (점수) 제작단계별 평가항목 및 가중치에 따른 평가 점수를 산출함

대항목	가중치	중항목	가중치	소항목	가중치
1.제작조직 역량	17.6%	1.1 경영주 역량	62.6%	1.1.1 경영주 경험 수준 수준	42.1%
				1.1.2 경영주 포트폴리오	42.2%
				1.1.3 경영능력	15.6%
		1.2 제작사 역량	37.4%	1.2.1 기업 포트폴리오	46.1%
				1.2.2 자금조달능력	53.9%
2.콘텐츠 경쟁력	47.3%	2.1 제작 능력	22.5%	2.1.1 작가 역량	24.1%

□ 콘텐츠 가치평가: 경제성 평가

- 투자를 결정할 주체(은행 및 VC, 엔젤 등)의 입장에서 계획 중인 콘텐츠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를 평가하여, 추정 가치를 화폐적 가치로 산출함
 - 5~8억 원, 10~15억 원 등 구간 추정금액을 산정함
 - 콘텐츠가 창출하는 현금흐름의 추정 화폐금액을 평가결과로 도출함
- 영화평가 사례
 - (평가) ① 일반영화와 다양성 영화 구분, ② 제작초기-중기-제작완료 구분함
 - (현금흐름) 1차 매출인 상영수입과 2차 매출인 부가 콘텐츠 수입의 총 매출액으로 제시함
 - (추정금액) 추정 화폐금액의 최소값과 최댓값 화폐 금액 범위로 산출함



□ 용자용 등급평가 모형

－ 평가요소

- 콘텐츠에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요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 환경에 주는 영향이 점점 더 커져갈 것임
- 프로젝트는 목적물의 완성단계, 완성 후의 운영 및 판매단계까지 구체적인 재무계획이 작성되는 게 일반적이며, 이러한 재무계획이 얼마나 타당한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임.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요소가 필요함

－ 평가모형 및 평가절차

- 장르별 모형구분 외에 세부 모형 분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동일한 영화 장르라도 블록버스터급 작 영화와 소규모 독립영화는 질적으로 상이한 범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최신 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트렌드에 민감한 장르의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성적 평가항목이나 조정항목(override)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

- 현재 기술보증기금의 융자(보증)형 문화콘텐츠 평가모형의 최종결과는 문화 콘텐츠 평가등급의 형태로 산출되고 있음
- 이러한 문화콘텐츠 평가등급은 기존 기술보증기금의 평가등급과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보증기금의 평가등급은 ‘기술사업화 성공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등급별 정의가 되어 있음
- 문화콘텐츠의 경우 ‘기술사업화 성공가능성’으로 등급 정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등급 정의가 요구되어짐
- 예를 들어 ‘문화콘텐츠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등급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등급 정의에 맞춰 측정이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임

□ 투자용 가치평가 모형

- 평가요소

- 평가요소의 체계를 정립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평가요소를 위계구조(hierarchy)에 따라 분류하는 것임
- 평가요소를 위계구조에 따라 분류할 경우 평가요소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도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 정량적 요소만을 반영한 통계모형의 경우 생존편의(survivorship bias)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식을 반영한 정성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량적 요소만을 반영한 기계적 통계 모형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모형 구축과정에서 변수에 한해 선별·제거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함

- 평가모형 및 평가절차

- 동일 장르 내에서도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하위 범주를 구분하거나, 문화예술 제작 규모, 연령(age), 사업진행 정도(완성 전/완성 후), 기타 질적인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모형 분류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문화예술산업은 문화예술의 완성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다가 완성 이후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문화예술산업을 시간의 진행에 따른 위험으로 구분하면 문화예술의 완성 전에 존재하는 문화예술 완성위험과 문화예술 완성 후의 상업화 수준에 따른 위험, 즉 흥행과 관련된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위험요소에 따라 평가모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트렌드에 매우 민감함. 트렌드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는 평가모형 내의 하나의 평가요소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평가모형의 결과를 조정하는 조정요소로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임
- 특히 해당 문화예술 사업의 위험요소가 반영된 할인율은 거시경제 환경과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에 따라 매년 변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문화예술 범주별로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할인율은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출해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율이 되어야 할 것임
- 평가결과
- 기존 모형은 장르별 문화예술의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매출 및 비용 범주의 구분을 지나치게 소략하여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 문화예술 범주별 또는 사업 전략별, 사업자의 가치사슬(value chain) 내 위상 등에 따른 고유한 매출과 비용 항목들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모형에서 투입용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방식은 통계적 방법만을 채택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범주의 특성상 과거 통계 자료 입수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전문가 판단에 의존하는 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콘텐츠산업의 경우, 가치평가 주관기관은 추정 파라미터(불확실성 지표 포함) 결정에 참여할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도 확보
 - 현금흐름 계산 시, 사업 전개의 불확실성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장르별 사업단계의 전개과정(예를 들어서 콘텐츠산업에서 영화는 기획개발, 사전제작, 제작, 후제작, 상영으로 이어지는 과정) 및 각 단계별 이행확률

(transition probability)의 계산 지침 확정 제시 필요

- 가치평가 결과는 단일금액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결과 값의 분포
- 또는 몇 가지 시나리오 수치로 제시함
- 콘텐츠 가치평가 영역에는 신용평가모형에서의 부도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검증지표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가치평가용 검증지표 개발이 필요함

참고문헌

1. 권오성·박민정(2009), 「정책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경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 김정수(2010), 「문화행정론: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집문당
3. 손정혁, 박지호, 방연주, 오지은, 유다인, 유 진, 황현숙(2019), 『예술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장르 분류체계 재설정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 윤용중(1997)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민간 및 정부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5. 윤용중(2002), 「문예진흥기금의 지원효과분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6. 이진아, 노이정, 장성희, 정진서, 장혜선, 김현지(2019), 『사후평가를 통한 문화예술지원 확대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이태호, 이정우, 최문영, 박소연, 「콘텐츠 기업육성을 위한 콘텐츠 금융지원 정책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8. 임상오(1997), 「"문화경제학의 사상적 원류: John Ruskin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9. 한승준 등(2017),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방안』, 중소기업연구원.
10. Schartz and Clements(1999), "Government Subsidie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12.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13.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14.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15.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